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00호

2019. 1. 3. (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례]

제694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5
제694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7
제694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69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0
제6951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695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695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19
제695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21
제6955호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22
제695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6957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6958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제6959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6960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29
제69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33
제6962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35
제6963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38
제6964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6965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696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제696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6968호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6969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7
제6970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51
제6971호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6972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56
제6973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6974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697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697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697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6978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697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698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698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제6982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6983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6985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6986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6987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2
제698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6989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6990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6991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699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99
제6993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699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699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699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108
제6997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699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6999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13
제700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700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700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70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700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700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입법예고]

제20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6
-------------------------------------	-----

◆ 고 시

제2018-432호 행정용어 순화어	127
제2018-433호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28
제2018-434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개정	139
제2019-1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지역 지형도면 고시	139
제2019-2호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0
제201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50
제2019-5호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50
제201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160
제2019-7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관련 권역설정 및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고시	161

◆ 공 고

제2018-2820호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163
제2018-283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65
제2018-2832호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 공고	166
제2018-2833호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차지원 계획 공고	170
제2018-2835호 2018년도 제20차 건축물 미술품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172
제2018-2844호 차량의 운행제한(변경) 공고	174
제2018-2845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175
제2018-2846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177
제2018-2847호 감리업 등록 공고	178
제2018-285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178
제2018-2852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179
제2018-2854호 회계직인 폐기 및 신규 등록 공고	179
제2019-2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180
제2019-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81
제2019-5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8 희망지사업 최종선정 결과공고	182
제2019-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83
제2019-8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84

◆ 구 고 시

제2018-12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대문구)	186
제2018-14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189
제2018-2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대문구)	191
제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191
제201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95
제2019-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196
제2019-2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197
제201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남구)	199
제2019-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송파구)	201

◆ 구 공 고

제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성북구)	202
제2018-1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노원구)	204
제201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강동구)	206

◆ 기 타

제2018-31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7
--	-----

◆ 정 정

제2018-1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정사항(서대문구)	208
--	-----

자치법규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 학급회, 동아리 등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고양하고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교육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우수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2.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
3. 전년도 학생자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4. 핵심 과제별 추진 로드맵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생자

치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제6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학생자치활동 운영 성과와 과제
4.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전담부서의 장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학부모 및 교원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육감은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이 우수한 학교나 교원,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학생자치활동이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학생자치활동 지원계획을 규정함(제4조).
- 다.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제5조~제7조).
- 라.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제8조)
- 마. 우수학교, 우수교원 등에 대한 표창(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홈페이지”란 학교가 이용자에게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 구축한 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생 및 학부모, 관계자, 지역주민 등 학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가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장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제4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시책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
2. 학교소개 및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본정보
3.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등 학습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
4. 이용자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교육정보, 학생안전, 위생, 급식 등에 관한 정보

② 학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 이용자의 편리한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전보고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10.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을 게재한 경우
11. 공개기한이 지난 경우
12.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② 공지사항 및 자료실 등은 학교의 새소식,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게시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한다.

③ 홈페이지 게시물은 목적에 맞는 게시판에 탑재하여야 하고 공개기한, 보존기한 등을 표시

하여 불필요한 게시물이 장기간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구축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매뉴얼의 작성·배포) 교육감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교육정보 제공 및 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매뉴체계 등 학교 홈페이지 운영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학교 홈페이지 지원에 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학교장의 홈페이지 운영, 정보관리, 게시물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

라. 교육감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4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교통사고”를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안전의 범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포함함(안 제5조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석면지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 건축물 및 물질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2.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3.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석면 해체·제거 공사 일정) ① 학교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일정 등을 담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계획을 검토한 후 공사업체의 공사 일정 및 각 학교의 석면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별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공사 시행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석면은 잠복기가 길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제4조).
- 나.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제5조).
- 다. 학교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제6조).
- 라. 석면 해체·제거 공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9조).
- 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관리, 홍보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1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영 제9조제10호”를 “영 제9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5억 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입목·죽 처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목·죽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1주당 200만원 이상인 입목·죽
2. 문화적,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목·죽

제21조 중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및 조정”을 “사용료의 요율”로, “제23조, 제26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를”을 “일반재산 대부 규정을”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을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준용)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17.12.27.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 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 수의매각 기준의 명확화(제34조)
- 나.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 개선·보완
 -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5조)
 -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
 - 보호 가치가 있는 입목·죽 처분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신설(제1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강서양천교육지원청(66교)”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65교)”으로 하고, 자치구명란 중 “강서구(36교)”를 “강서구(35교)”로 하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서부교육지원청 서울가재울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1”을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61”로, 서울연은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은평구 응암동 242-424”를 “은평구 백련산로2길 35”로, 남부교육지원청 서울하늘숲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구로구 천왕동 산13-1”을 “구로구 오리로 1106”으로, 서울금나래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금천구 독산동 441-28”을 “금천구 시흥대로79길 37”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강술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강동구 강일동 414-2”를 “강동구 고덕로97길 80”으로, 서울잠일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송파구 백제고분로 19”를 “송파구 올림픽로 95”로, 서울위례별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송파구 위례동 420”을 “송파구 위례광장로 243”으로, 서울해누리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송파구 가락동 479”를 “송파구 송파대로37길 95”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공진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강서구 공항동 1324”를 “강서구 마곡서로 33”으로, 서울공항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강서구 공항동 399”를 “강서구 마곡서로1로 68”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울현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강남구 울현동 231”을 “강남구 밤고개로21길 15”로, 서울자곡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강남구 자곡동 502-3”을 “강남구 자곡로 150”으로, 서울언남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서초구 내곡동 122”를 “서초구 현릉로8길 42”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송신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를 “성동구 마장로 161”로 한다.

별표 2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해누리중학교의 위치란 중 “송파구 가락동 479”를 “송파구 송파대로37길 95”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마곡중학교의 위치란 중 “강서구 방화동 207-1”을 “강서구 마곡중앙5로 58”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곡중학교의 위치란 중 “서초구 신원동 294 일원”을 “서초구 청계산로7길 9-20”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남서울중학교의 위치란 중 “관악구 난곡로64길 106”을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97”로 한다.

별표 3 공항공등학교의 위치란 중 “강서구 개화동로 495”를 “강서구 방화대로34길 43”으로, 도선고등학교의 위치란 중 “성동구 하왕십리동 533”을 “성동구 마장로 156”으로, 금호고등학교의 위치란 중 “성동구 금호1가동 339”를 “성동구 금호로 118”로 한다.

별표 6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의 위치란 중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독산동)”를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로 한다.

별표 7 구분란 중 “강서양천교육지원청(27교)”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26교)”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21교)”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22교)”으로 하고, 자치구명란 중 “강서구(15교)”를 “강서구(14교)”로 “관악구(12교)”를 “관악구(13교)”로 하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구암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관악구	서울구암유치원	관악구 은천로 93 (유치원동)

별표 7 동부교육지원청 서울새솔유치원의 위치란 중 “중랑구 신내동 241”을 “중랑구 신내역로1길 136”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서울가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1”을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61”로, 서울연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은평구 응암동 242-424”를 “은평구 백련산로2길 35”로, 남부교육지원청 서울금나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금천구 독산동 441-28”을 “금천구 시흥대로79길 37”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강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강동구 강일동 414-2”를 “강동구 고덕로97길 80”으로, 서울잠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송파구 백제고분로 19”를 “송파구 올림픽로 95”로, 서울위례별유치원의 위치란 중 “송파구 위례동 393”을 “송파구 위례순환로 371”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강서구 공항동 1324”를 “강서구 마곡서로 33”으로, 서울공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강서구 공항동 399”를 “강서구 마곡서1로 68”로, 서울마곡유치원의 위치란 중 “강서구 방화동 241-5”를 “강서구 마곡서1로 139-13”으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강남구 남부순환로 363길 19”를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19”로, 서울울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강남구 율현동 231”을 “강남구 밤고개로21길 15”로, 서울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강남구 자곡동 502-3”을 “강남구 자곡로 150”으로, 서울 은곡유치원의 위치란 중 “강남구 세곡동 405-17”을 “강남구 현릉로569길 41”로, 서울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서초구 내곡동 122”를 “서초구 현릉로8길 42”로, 서울청계숲유치원의 위치란 중 “서초구 신원동 247”을 “서초구 청계산로11길 14”로, 서울양재유치원의 위치란 중 “서초구 바우피로 18길 14”를 “서초구 바우피로18길 14”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송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를 “성동구 마장로 16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공항고등학교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19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
2019년 8월 1일자로 고등학교 1개교의 위치를 이전하며,
나. 존속기간 만료된 2개교(원) 폐지하고,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학교 39개교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 및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별표 1)

- ☐ 폐지 : 1개교(존속기간 만료)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강서구 양천로55길 22)
 - ☐ 위치 정비 : 14개교(도로명주소로 변경 및 정비)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가재울초등학교(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61)
 - 서울연은초등학교(은평구 백련산로2길 35)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하늘숲초등학교(구로구 오리로 1106)
 - 서울금나래초등학교(금천구 시흥대로79길 37)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술초등학교(강동구 고덕로97길 80)
 - 서울잠일초등학교(송파구 올림픽로 95)
 - 서울위례별초등학교(송파구 위례광장로 243)
 - 서울해누리초등학교(송파구 송파대로37길 95)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강서구 마곡서로 33)
 - 서울공항초등학교(강서구 마곡서1로 68)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울현초등학교(강남구 밤고개로21길 15)
 - 서울자곡초등학교(강남구 자곡로 150)
 - 서울언남초등학교(서초구 현릉로8길 42)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송신초등학교(성동구 마장로 161)

나. 중학교 (별표 2)

- ☐ 위치 정비 : 4개교(도로명주소로 변경 및 정비)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해누리중학교(송파구 송파대로37길 95)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마곡중학교(강서구 마곡중앙5로 58)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내곡중학교(서초구 청계산로7길 9-20)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남서울중학교(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97)
- 다. 고등학교 (별표 3)
 - ☐ 위치 이전 : 1교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공향고등학교(강서구 방화대로34길 43)
 - ☐ 위치 정비 : 2교(도로명주소로 변경 및 정비)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도선고등학교(성동구 마장로 156)
 - 금호고등학교(성동구 금호로 118)
- 라. 각종학교 (별표 6)
 - ☐ 위치 정비 : 1교(도로명주소 정비)
 - 남부교육지원청
 -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마. 유치원 (별표 7)
 - ☐ 신설 : 1개원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서울구암유치원(동작구 은천로 93)
 - ☐ 폐지 : 1개원(존속기간 만료)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병설유치원(강서구 양천로55길 22)
 - ☐ 위치 정비 : 18개원(도로명주소로 변경 및 정비)
 - 동부교육지원청
 - 서울새솔유치원(중랑구 신내역로1길 136)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가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61)
 - 서울연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평구 백련산로2길 35)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금나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금천구 시흥대로79길 37)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술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동구 고덕로97길 80)
 - 서울잠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송파구 올림픽로 95)
 - 서울위례별유치원(송파구 위례순환로 371)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서구 마곡서로 33)
 - 서울공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서구 마곡서1로 68)

- 서울마곡유치원(강서구 마곡서1로 139-13)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19)
 - 서울을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남구 밤고개로21길 15)
 - 서울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남구 자곡로 150)
 - 서울은곡유치원(강남구 현릉로569길 41)
 - 서울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초구 현릉로8길 42)
 - 서울청계숲유치원(서초구 청계산로11길 14)
 - 서울양재유치원(서초구 바우피로18길 14)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송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성동구 마장로 161)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이하 “수영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
3. 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4. 교원 연수
5. 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 교육감은 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 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수영교육 연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현재 수상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바, 향후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수영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실태조사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마.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문서(이하 “공문서”라 한다)”란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유관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학교 공문서 감축 요청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부서장을 공문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공문서책임관은 학교 공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분량의 적정성
 4. 수신처의 적절성
 5. 그 밖에 학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문게시판 활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사항 등의 학교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학교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교육감, 각급 기관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학교 공문서 감축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제4조).
- 다. 공문게시판 활용에 대해 규정함(제5조).
- 라.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마.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분석에 대해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5호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한 응시자 비용 부담 완화 및 교육평
등 이념 구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의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조례 제66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고 집행기능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로,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제7조, 제9조 및 제12조)

나.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 중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평생진로교육국으로 이관(제8조 및 제8조의2)

다.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의 분장사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신설(제23조)

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중 “가평영어교육원”을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별표 2)

마. 한시기구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조직 재정비에 따라 폐지(조례 제66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 삭제)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분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흥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 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656 (호평동)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7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2018.1.4. 시행, 일부개정)으로 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이 ‘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8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하되, 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방대하고 복잡한 예산·결산·기금 등에 대한 분석과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연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과 예산재정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라.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59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주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안 제11조)
 -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등으로 함(안 제12조 제1항)
 -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사업비의 보조 등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0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 격차”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나 생활권역에서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4.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8.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구와의 협력)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행복 증진 사업들이 자치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예산에 연계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평가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 운영)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민의 행복중심으로 서울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 마. 행복영향평가, 예산 운영, 행복 증진 교육,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부터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 조례 관련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너목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9조제9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7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8조제5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전업농어업”을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5조의2제3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3조”로 한다.

제16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4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제23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8조제1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보전의 대상을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을 「물환경 보전법」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9건의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나. 종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다. 종전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2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시와 자치구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자치구,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

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화장실 등”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3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 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
 -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온마을아이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마을아이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3.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 등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
4.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5. 시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
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7.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

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2.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자치구,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의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수당지급)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나.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이 돌봄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 주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 주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7조)

바.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협의회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및 해촉, 수당지급,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4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금 상환방식은 지원 받은 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균등분할 상환
2. 중도 일시 상환
3. 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자의 지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이므로 조례에 지원금 상환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금의 상환방식을 규정함(안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5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드라마·광고·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영상제의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영상 관련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광고를 추가하고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하는 등 영상산업 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사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 광고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규정함(안 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8호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정보시스템”이란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이하 “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된 현금·현물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복지·건강 분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및 그 데이터

제3조제3항 중 “제2항 제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정보시스템”을 각각 “복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 제2항 제1호에 관한”을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을 “관계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인정보보호”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을 “제3조제2항제4호의” 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다. 인용된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두 개의 조항에 중복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969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2.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5.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6.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2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에 수익금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회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위탁받은 사무 중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검사·감독)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종사자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조항 마련 및 근거법령,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사회서비스원의 수행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정관(안 제7조), 임원(안 제8조, 제9조), 이사회(안 제10조),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을 규정함.
- 마. 사무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바.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검사, 감독 근거규정 및 내용을 마련함(안 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0호**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좋은 돌봄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좋은 돌봄 인증”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란 제2호에 따라 좋은 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좋은 돌봄 인증대상) 좋은 돌봄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다음 각 목의 노인복지시설
 -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제5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좋은 돌봄 인증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제의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
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증의 종류,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등
4. 인증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의 시행시기) ① 인증은 운영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인증대상 시설의 종류별로 인증의 시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좋은 돌봄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신청서 등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인증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장이 정하는 인증의 표시
 4. 기타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매년 인증기관에 대한 연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할 구청장과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인증기관이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명령) 시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지 아니한 횟수가 시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인증기간 중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인증제도의 평가)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의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인증제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행하여진 서울형 어르신 돌봄 시설 인증 및 인증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인증 및 재정적 지원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요양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어르신 돌봄 시설 인증제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좋은 돌봄 인증’ 을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인증대상 기관은 노인복지시설과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기관으로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매년 좋은 돌봄 인증제도 운영계획과 그 시행에 관하여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인증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인증대상 기관의 종류별로 인증의 시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인증의 신청은 관할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하며, 인증의 심사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법인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안 제9조)
- 사. 인증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 아. 인증기관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과 구청장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 자. 시장은 인증요건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차. 기존에 시행 중인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및 인증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인증 및 재정적 지원으로 봄(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1호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의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관련 조항 신설(제5조제2항과 각 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2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항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공항활성화사업”이란 김포공항의 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공항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성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
4.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의 신청 등) ① 제4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재정지원요청 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요청의 목적 및 내용
4.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

5. 재정지원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6. 재정지원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준수사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자치구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의무) ①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재정지원요청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상 필요한 비용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및 내용과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도록 함(안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3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인관청”이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

모델링 및 용도변경

제4조(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3조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8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다.

② 영 13조의4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6)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의 7) 운수시설인 건축물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규모가 영 별표 1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제6조(이의신청) 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사후관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의결”을 “심의·의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안 제3조 관련 별표)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 및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5조)

라. 조문 표현 정비(안 제6~7조)

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본 조례의 시행규칙은 사문화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삭제(현행 제10조)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개발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를 따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 이상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 이상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 이상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 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 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km 이상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 이상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 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50,000㎡ 이상
2) 제1종근린생활 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3)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 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1,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동·식물원	부지면적 17,000㎡ 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 도원)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80,000㎡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28,000㎡ 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석 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000㎡ 이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56,000㎡ 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5,000㎡ 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35,00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7,0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000㎡ 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20) 장례식장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sum_{i=1}^n \frac{Pia}{Mia} \times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 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라.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마.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을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4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을 “위반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단, 행정처분에 대한 불

복이 있을 경우 그 불복절차)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별표 1의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란 다음에 6.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제3조제9호)	200,0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해당 위반행위가 2018년 9월 21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 나. 법의 조문과 달리 현행 조례의 조문은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를 추가로 신설(안 제3조제9호, 제4조 관련 별표 1)
- 나.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안 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재해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지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2조제7호).
 나.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 각종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8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중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별 할인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통약자 등을 위한 시설 개선, 공공자전거 요금감면 및 정비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공공자전거 활성화, 상위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전기 충전소 설치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2. 주요내용

- 가.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및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일반인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치 마련(안 제3조제3항)
- 나.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다.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 및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규정(안 제10조의2)
- 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공공자전거 관련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 승인 시 재위탁 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의2제3항)
- 마.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9호**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인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인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2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세계유산등재 관련 민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별 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인정(안 제4조제2항)
- 나. 서울특별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3호**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추진함으로써”를 “추진하고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함으로써”로 한다.

제22조 중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 보조금 등의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시민 등은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가 규제조치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법령위반 행위 등으로 명시함(안 제22조)

다.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주체들이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라. 대기 항목 측정방법 삭제 및 PM-2.5 농도기준 추가(안 별표 1)

[별표 1] 환경기준(제14조 관련)

1. 대기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SO ₂)	연간 평균치 0.01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일산화탄소(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NO ₂)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50 μ g/ 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μ g/ m ³ 이하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15 μ g/ 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μ g/ m ³ 이하
오존(O ₃)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5 μ g/ m ³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μ g/ m ³ 이하

비고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μ m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을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루어 질”을 “이루어질”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별표 1”을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평가서초안과”를 “평가서 초안과”로, “평가서초안의”를 “평가서 초안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평가서초안”을 “평가서 초안”으로, “관할구청장”을 “관할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서초안”을 “평가서 초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을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을 “대상사업” 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를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평가서초안” 을 “평가서 초안” 으로, “제11조에 따른” 을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제1종” 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 를 “(평가업자 신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평가업자로서 제10조제1항” 을 “제10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평가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한 날부터”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각각 “작성하지 아니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제1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2항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금품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금품제공을 하지 아니할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판단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 이라 한다)” 을 “사업계획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날로” 를 “날”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를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청을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완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을 “(재협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제15조에 따른 협의 및 제17조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 을 “대상사업 규모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을 “(변경협의)” 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3항 중 “승인기관”을 “승인기관장등”으로,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를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로, “들어야한다”를 “들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감독은”을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중 “제15조 및 제17조”를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까지”로 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중 “받은”을 각각 “받아야 하는”으로, 같은 항 중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근거, 내용 및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 을 “제1항” 으로, “시행한 때” 를 “시행하였을 때” 로, “공사중지” 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45명 이상 60명 이하” 를 “45명 이상 60명 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을 “시장은” 으로, “심의한다” 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서” 를 “평가서”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반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측 할” 을 “해측할”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무” 를 “직무”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평가서초안” 을 “평가서 초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구청장” 을 “관할 구청장”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 을 “전문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서초안” 을 “평가서 초안” 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평가서초안의 검토 등)” 을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를 “대상사업 중” 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를 “각 호의 모두에” 로, “경우에” 는 “경우”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 제2항” 을 “제29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협의 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원” 을 “위원(다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평가서초안” 을 “평가서 초안” 으로 한다.

제33조 중 “관련법령” 을 “법 등 관련 법령” 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준용

- 공개된 평가서초안의 주민 의견 수렴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신청하면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
- 평가서의 보완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협의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완 요청에 따른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 가능(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건 정비 및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요건 신설(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장은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또는 요구하도록 요청(안 제20조 및 제21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환류기능 강화(안 제20조제9항)
- 사전공사 허용범위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받은 공사중지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 사업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 등(안 제27조)

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안 제10조)

라. 협의대상 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안 별표 1)

마.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과 조문을 일치시키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4. 도로의 건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2km 이상 4km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왕복 2차로 이상으로서 5km 이상 10km 미만의 확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전)

5. 철도의 건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 1km 이상 2km 미만인 것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 2km 이상 4km 미만인 것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km 이상 10km 미만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한다.	○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 전. 다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심의 전
7.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8.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6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9.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단, 용지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5천㎡ 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0. 폐기물 처리시설 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 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폐기물처리업 외의 경우 같 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 획의 승인 전
11.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 상 33만㎡ 미만인 것	○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실 시계획의 수립 전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사업규모는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영향권역에

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위 표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6.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사업의 경우 위 표 제1호자목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5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녹

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대해 ‘위원 연임 기한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2년 임기의 경우 연임 3회로 6년까지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사업의 추진 등 효율성 저하, 신규 위원 위촉시 전문가 확보 어려움, 위원회 활동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6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 가. 미세먼지 중 미세먼지(PM-2.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	-------	-------	-------

별표 2의 미세먼지(PM-2.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μ g/m 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35 μ g/m ³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μ g/m 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μ g/m ³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의 미세먼지(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정되는 미세먼지(PM-2.5) 주의보와 민감군 주의보의 발령기준이 동일하여 민감군 주의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의2 및 별표 4)
- 나. 개정된 국가의 미세먼지(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을 반영함(안 별표 1 및 2)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7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사업장, 공사장의 작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을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5.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

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차량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4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고농도 미세먼지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6조 ~ 제8조)

라.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혼잡통행료(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규격에 대한 상위법 조항을 삽입하고, 개별 조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혼잡통행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나.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5항제1호)
- 다.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혼잡통행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5항제2호)
- 라.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감면은 관련 조례에 따름을 명시함(안 제6조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89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30명이내” 를 “30명 이내” 로 하고, “2인” 을 “2명” 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하절기” 를 “여름철”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절기” 를 “겨울철” 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시설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2. 주택형 태양광 설비
3. 건물형 태양광 설비
4. 그 밖의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재정적(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시설’로만 명기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나.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 세제·제정 등의 지원 대상 사업을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5조제2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0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2항에서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재정적(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포괄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하였기에, 보급사업시 시민등에 대한 재정적(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나. 재정적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2항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며, 잘못된 타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정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를 현행의 사업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조례 중 잘못된 타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정확히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1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나. 자원봉사캠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시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압류한 재산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7조(대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결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한 때에는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선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2차 심사의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1. 1차 심사 : 서울특별시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

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할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 또는 선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자를 결정하되, 선정하는 대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대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납,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대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등의 배분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조례 제6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매각기관 및 대상기관의 선정과 예술품등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추가하고 약칭을 정비(안 제2조)
-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 14개 신설
- (1) 시장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공모절차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2) ‘대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대상기관’의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기관’의 선정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함(안 제9조)
 - (5) 대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6)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에게 평가 의뢰를 할 수 있음(안 제11조)
 - (7)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8) 매각재산의 인도·수령·배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
 - (9)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10) 전문매각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안 제17조)
 - (가)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지출이 과다한 경우,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그 밖에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나)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고,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음(안 제18조, 안 제19조)
- 다. 기존의 제6조(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제20조로 변경(안 제20조)
-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3호****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은 “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제목인 “이용자의 손해배상”은 “이용자의 의무”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공개 하여 인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 정책 수립 및 안전점검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안 제7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조 번호를 제4조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조 번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조 번호를 제5조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의 조 번호를 각각 제8조, 제9조, 제10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조 번호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의 조 번호를 각각 제12조,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예산 확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내외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과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등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통합운영)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2017.3)」 기본계획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겠다는 중장기적 플랜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가 확정고시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3)」에도 청소년시설 개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바, “청소년 ONE-STOP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 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형 유급병가”란 근로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를 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검진이 필요함에도 소득상실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 또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후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 외의 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서울형 유급병가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액
2. 지원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장, 보건소장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의 적정 여부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의 검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유급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급병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심의
2. 서울형 유급병가 지침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건강·의료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 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정규직 및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으로(정규직에 비해 영세자영업자는 2배, 일용직은 1.7배의 의료비 지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다. 이에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도입을 통해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나 지원책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2조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서울형 유급병가의 금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시책수립, 중앙정부제도와의 연계)
- 다. 제4조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구체적인 제도의 안을 규칙에 위임함.
- 라. 제5조 매년 동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
- 마. 제6조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달체계 및 신청주의 명시함.
- 바. 제7조~제12조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설명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7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처에 한계가 있음
 - 나. 이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를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를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진대피소의”를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 게시의무,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방안을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대피소 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한파쉼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안 제 43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9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 전 지역에서 지하 공간 개발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00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 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000세대 이상인 경우 25퍼센트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군·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한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로 인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용의 완화범위를 정함(안 제20조 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00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제3항제1호의 가목, 사목, 너목, 더목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제13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4 중 사무명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호 사목 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단위 청사에 한함)”을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한정함)”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 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같은 호 타목 중 “(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을 “(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으로 하며, 더목과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같은 표 사무명란 제5호 중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을 “지형도면”으로, “사무”를 “사무(다만,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시설의 접도조건을 시장과 협의를 통해 자치구가 필요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을 조정하며, 위임기준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54조제13항)

다.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 입체·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등을 재정비함(안 별표4)

◆ 서울특별시조례 제700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진·화재 및 공사장”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 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라.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 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 바.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 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건축안전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 ”를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다음 표”를 “별표 6”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제50조제2항제9호(중전의 제8호) 중 “피난·화재”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보완하여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명시함(안 제49조제2항)

나. 구 건축안전센터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9조제3항)

다. 안전점검 등급기준을 별표 6으로 개정함(안 제49조제4항)

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을 포함시킴(안 제50조제2항제8호)

[별표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 서울특별시조례 제70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서울시민이 42%인 반면, 경기도민 46%, 기타 12%로(2012년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시민 이외에도 경기도민의 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나. 현재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가족지원카드 소유자에게 입장료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둥이행복카드로 한정하고 있어, 공원이 위치한 과천시와 경기도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다. 이에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로 소유자 및 가족으로 한정된 것을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로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요금의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로 한정된 혜택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카드” 로 변경하여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00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물재생시설 내 주차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주관하는 행사	100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30
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1.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 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 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00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함으로 조례 설치 목적 및 근거를 분명히 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 4. 19.자로 미관지구가 폐지됨(2017. 12. 29. 개정)

나. 이에 따라, 미관지구와 연동되어 지정되었던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을 도로명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하도록 추진 중인바, 건축선 지정고시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TEL.02-2133-8332, FAX.02-2133-0736, E-mail:hoon8657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2호

행정용어 순화어

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행정용어 순화어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용어 순화어

순서	바뀌야 할 말(순화대상어)	권하는 말(행정순화어)
1	브로셔, 브로슈어	안내서, 소책자
2	GIS	지리 정보 시스템, 지리 정보 체계
3	세미나	발표회, 토론회, 연구회
4	PQ	사전심사
5	BL/블록	구역
6	TF: 태스크포스(T/F,티에프)/ 태스크포스팀(T/F팀,TF팀,티에프팀)	특별 전담 조직, 전담 조직, 특별팀, 전담팀, 전담반
7	리더십	통솔력, 지도력, 영향력
8	마일리지	이용실적(점수), 참여실적(점수)
9	버스쉘터(Bus shelter)	버스 쉼터
10	인근역	이웃역, 인근역
11	질서 저해 행위자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12	사면(斜面)	비탈(면)
13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14	웹하드	누리저장소
15	사이트맵	누리집 지도
16	수납	돈 내는 곳/계산 창구
17	배식하다 배식 배식실	배식하다 배식 공동주방,간이주방
18	(병원 진료비) 하이패스	진료비 자동결제

* 문의 시민소통담당관 소통평가팀 2133-644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3호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5호(2010.3.4)로 정비구역 지정된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6조 제2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건폐율	용적률	층수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B	12	공덕동	119	1.13 (11,315㎡)	60%	190%	12층이하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B	12	공덕동	119	1.13 (11,326㎡)	60%	210%	20층이하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 계획용적률은 서고 제2010-97호(2010.3.18.)의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반영한 사항임

※ 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2012.5.22.) 반영한 사항임(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층수 제한 폐지)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덕 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원	11,315	증) 11	11,326	

3. 정비계획의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1,326	-	11,326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1,315	증) 11	11,326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2,033	감) 1,548	485	4.3	
	도로		813	감) 328	485	4.3	
	소공원		1,220	감) 1,220	-	-	
획지	소계		9,282	증) 1,559	10,841	95.7	
	A	소계	9,282	감) 194	9,088	80.3	
		1	9,282	감) 2,622	6,660	58.8	공동주택
		2	-	증) 784	784	6.9	근생, 업무 등
		3	-	증) 972	972	8.6	근생, 업무 등
		4	-	증) 672	672	6.0	근생, 업무 등
	B	소계	-	증) 1,753	1,753	15.4	
		1	-	증) 544	544	4.8	근생, 업무 등
		2	-	증) 384	384	3.4	근생, 업무 등
		3	-	증) 151	151	1.3	근생, 업무 등
		4	-	증) 194	194	1.7	근생, 업무 등
		5	-	증) 341	341	3.0	근생, 업무 등
		6	-	증) 139	139	1.2	근생, 업무 등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76	6~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6 (92)	중로 3-25호선	460-2번지		'64.01.24 건고 제768호	
변경	소로	3	76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6	중로 3-25호선	460-2번지			폭원축소
기정	중로	3	25	12~16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20 (40)	공덕동 만리로	공덕동 마포로		'62.12.08 건고 제177호	
변경	중로	3	25	12~17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20	광로 3-293호선	79-18번지			선형변경 연장정정 기·종점변경
기정	소로	3	7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1	120-12번지	120-28번지		'10.03.04 서고 제2010-75호	
변경	소로	3	77	4~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1	120-12번지	120-28번지			선형변경

※ ()는 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76	소로 3-76	폭원 축소 (6~8m → 6m)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도로 폭원 축소
중로 3-25	중로 3-25	선형 변경 (12~16m → 12~17m) 연장 정정 및 기종점 변경 (320m → 220m)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도로 선형 변경 - 착오기재에 따른 기정 연장 정정 및 기·종점 변경
소로 3-77	소로 3-77	선형 변경 (6m → 4~6m)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도로 선형 변경

2)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	공원	소공원	공덕동 118-19번지 일대	1,220	감) 1,220	-	'10.03.04 서고 제2010-75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 폐지	- 일부 획지의 존치 등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원 폐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소계		560.0	증) 318.4	878.4	518.8㎡ 이상
	경로당	획지A-1	80.0	감) 10.0	70.0	66.6㎡ 이상
	작은도서관	획지A-1	-	증) 58.4	58.4	
	주민운동시설	획지A-1	-	증) 300.0	300.0	
	어린이놀이터	획지A-1	400.0	감) 100.0	300.0	
	주민공동시설	획지A-1	80.0	증) 70.0	150.0	
관리사무소		획지A-1	90.0	증) 15.0	105.0	15.8㎡ 이상
휴게시설		획지A-1	-	증) 2개소	2개소 이상 설치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비 · 개량계획 (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 정	공덕제6주택 재개발정비구역	11,315	획지	9,282	공덕동 119번지 일대	59	-	-	59	-	
변 경	공덕제6주택 재개발정비구역	11,326	A	9,088	공덕동 119번지 일대	60	6	-	54	-	-
			B	1,753							

※ 존치계획(동) : 근린생활시설 6동

※ 존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신축 가능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택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 정	공덕제6 주택 재개발	11,315	획지	9,282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5이하	235이하	49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주택공급계획 : 173세대 ▶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총 건립세대수 80% 이상		145세대 (82.82%)		
			전용면적 85㎡ 초과		총 건립세대수 20% 미만		28세대 (16.18%)		
		계		-		173세대 (100.00%)			
		▶ 임대주택 건설계획 : 해당없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기 정	심의완화 사항		▶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에 의한 층수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4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평균16층이하)						
			층수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부담면적		최소부담 기준		실제부담 면적		
			변경	구분	비율(%)	면적(㎡)	비율(%)	면적(㎡)	
			제2종(12층) →2종(평균16층)	층수완화	10%이상	11,315㎡ × 0.1 = 1,131.5㎡	14.88%	1,68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 건축물 배치계획 등은 보완하여 건축심의를 받을 것

- 한옥(공덕동 120-21)은 구역내 이축·보존 활용

- 법사랑길(현 마포대로14길) 북측 차량 진·출입 불허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택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법적상한)	높이(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 경	공덕제6 주택 재개발	11,326	A	1	6,660	공덕동 119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0이하	210이하 (235이하)	65이하
				2	784	공덕동 234-1번지 일원	관계법령에 따름	60이하	200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3	972	공덕동 119-8번지 일원		60이하	200이하	
				4	672	공덕동 118-29번지 일원		60이하	200이하	
			B	1	544	공덕동 119-5번지 일원	관계법령에 따름	60이하	200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2	384	공덕동 119-1번지 일원		60이하	200이하	
				3	151	공덕동 119-43번지 일원		60이하	200이하	
				4	194	공덕동 119-45번지 일원		60이하	200이하	
				5	341	공덕동 118-21번지 일원		60이하	200이하	
				6	139	공덕동 118번지 일원		60이하	20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166세대 ▶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총 건립세대수 80% 이상		166세대 (100.00%)	소형(임대)주택 15세대 포함				
전용면적 85㎡ 초과			총 건립세대수 20% 미만		-					
계			-		166세대 (100.00%)					
심의완화 사항 (획지 A-1)		▶ 임대주택 건설계획 : 해당없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 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25% - 정비계획용적률(21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3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12.5.) 조건 - 정비사업의 새로운 유형(철거 및 존치 혼합)임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에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도 이런 취지가 유지·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B-1~B-5 획지 남측 보차혼용통로에 대상지 동측 만리재옛길변에서 진입한 차량의 회차공간 마련할 것 - 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만리재옛길변 ‘공개공지’의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1.5m : 마포대로14길(B-5, B-6, A-4), 마포대로14나길(A-2, A-3)
		▶ 3.0m : 마포대로14길(B-1, B-2, B-3, B-4), 만리재옛길(A-1, A-4)
		▶ 5.0m : 만리재옛길(A-4)
	보차혼용통로	▶ 획지 B-1, B-2 사이 폭원 4m (24시간 개방) ▶ 마포대로14길 이변부와 획지 A-1 사이 폭원 8m (24시간 개방)
	공공보행통로	▶ 획지 A-1 : 보차혼용통로~만리재옛길 연결, 폭원 6m (24시간 개방, 필로티 높이 6m)
	공개공지	▶ 획지 A-1 : 만리재옛길변
교통처리 계획	공동주차출입구	▶ 마포대로14나길변(A-1, A-2 사이 폭원 10m)
	차량출입불허구간	▶ 마포대로14길 : 획지 B-2~B-5 및 획지 A-4

4)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 (A-1~4)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1,326㎡	9,088㎡	485㎡	122㎡	36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85㎡ - 122㎡ - 363㎡ = 0㎡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210%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10% 적용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text{계획(기준)용적률} \times (1 + 1.3\alpha)$ = $210\% \times (1 + 1.3 \times 0) = 210\%$ 이하 *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0\text{㎡} / 9,088\text{㎡} = 0$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235% 이하				

마.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내용		비고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35%	
	정비계획용적률	210%	

증가된 용적률의 50%	소형주택 건설규모 $= (\text{예정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235\% - 210\%) \times 50\% = 12.5\%$ 이상				
연면적 환산	연면적 $= 12.5\% \times \text{대지면적} = 12.5\% \times 6,666\text{m}^2$ $= 832.5\text{m}^2$ 이상				
소형(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44m ²	44.98m ²	15.34m ²	60.32m ²	15세대
	- 계획 소형(임대)주택 공급면적 $= 904.80\text{m}^2 (60.32\text{m}^2 \times 15\text{세대}) > 832.5\text{m}^2$ - 세대수 = 15세대 (9.04%), 전용면적 60m² 이하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기 정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공덕6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현재 : 85세대 증) 88세대 - 계획 : 173세대	해당없음	
변 경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공덕6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현재 : 85세대 증) 81세대 - 계획 : 166세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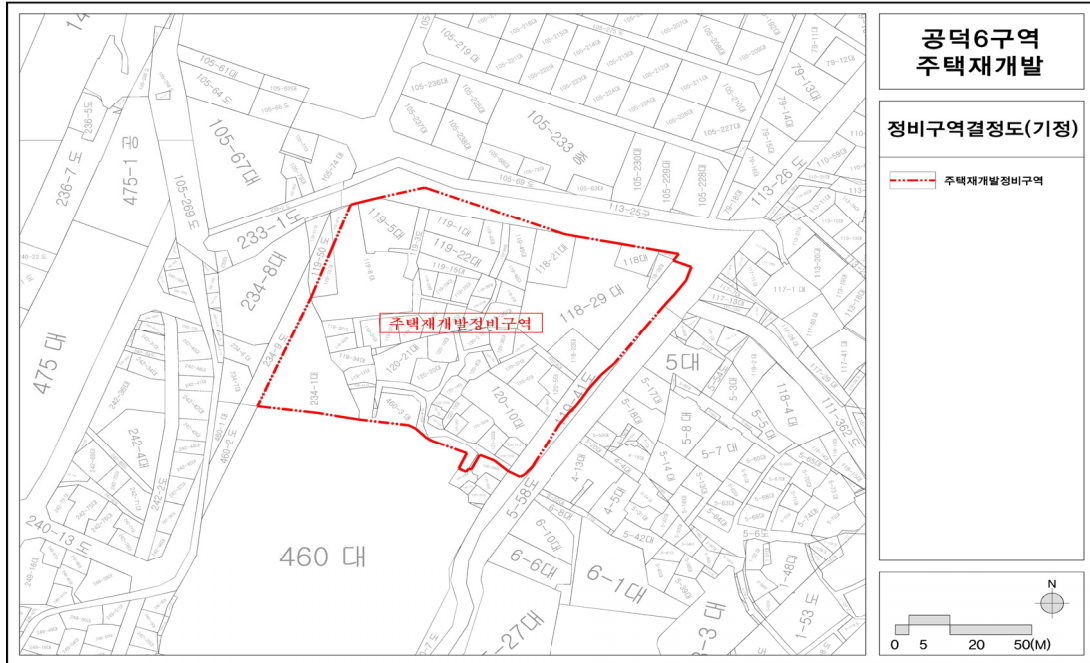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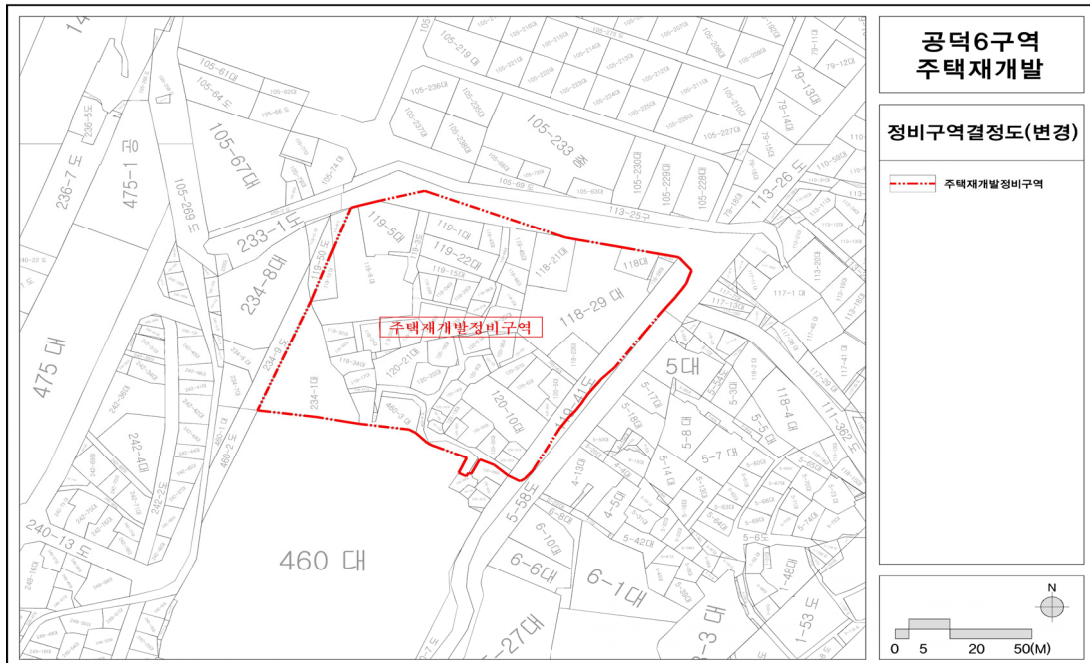
4. 관련서류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2133-7238),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정비구역(계획) 결정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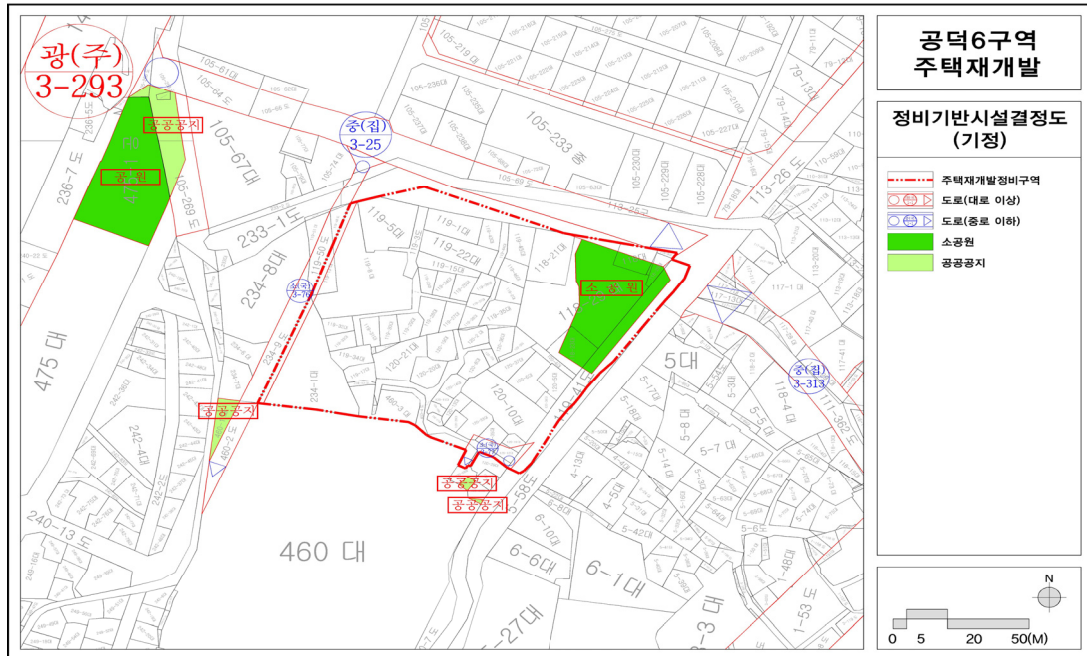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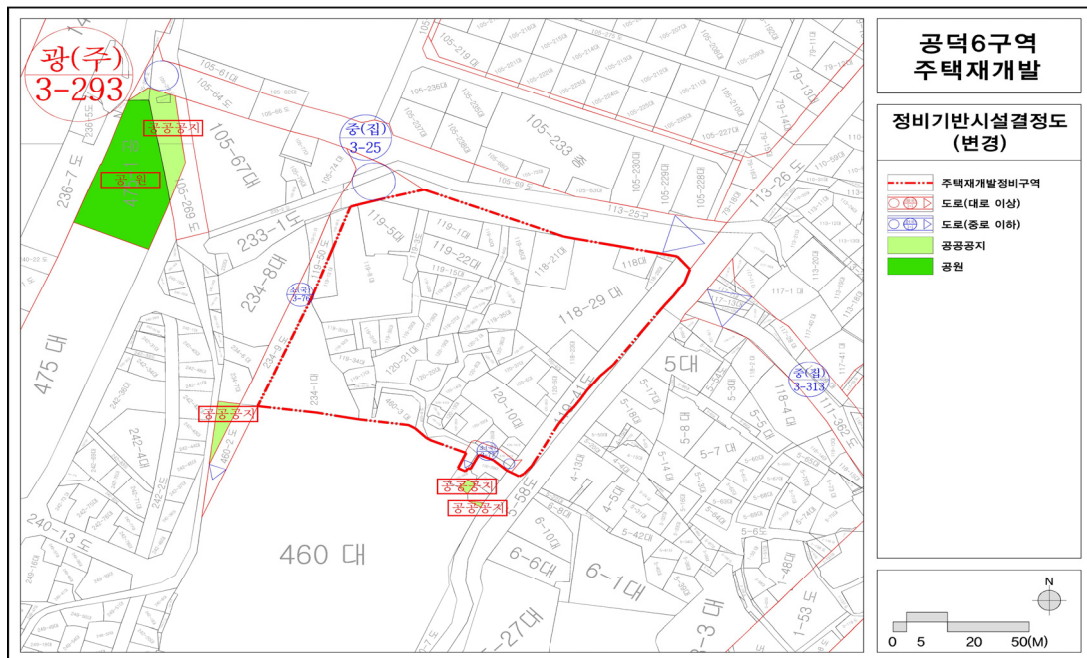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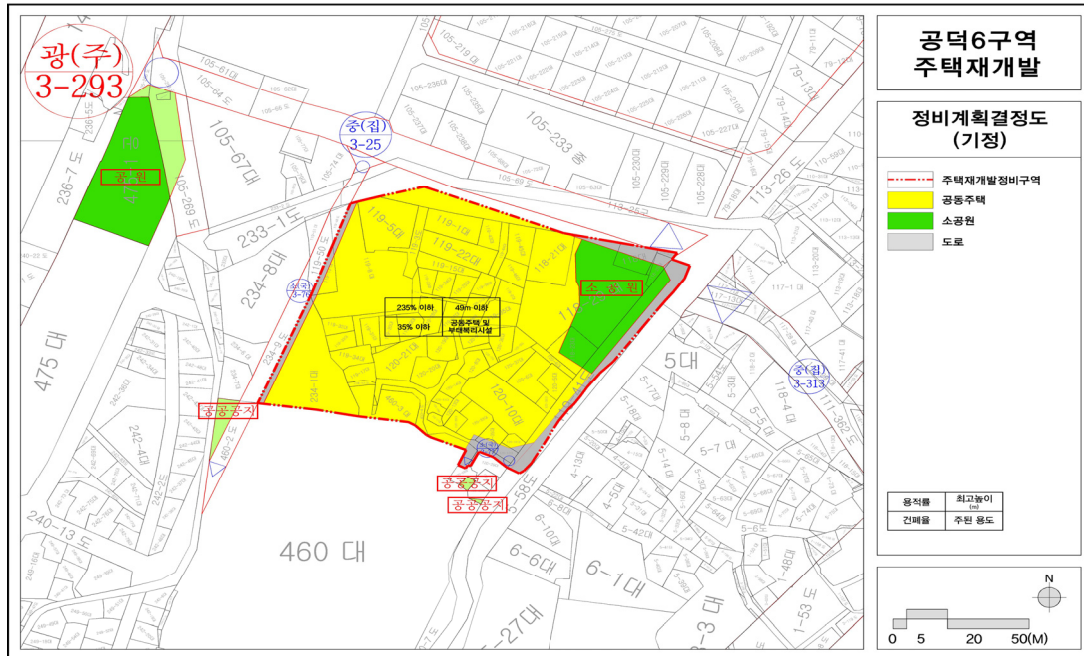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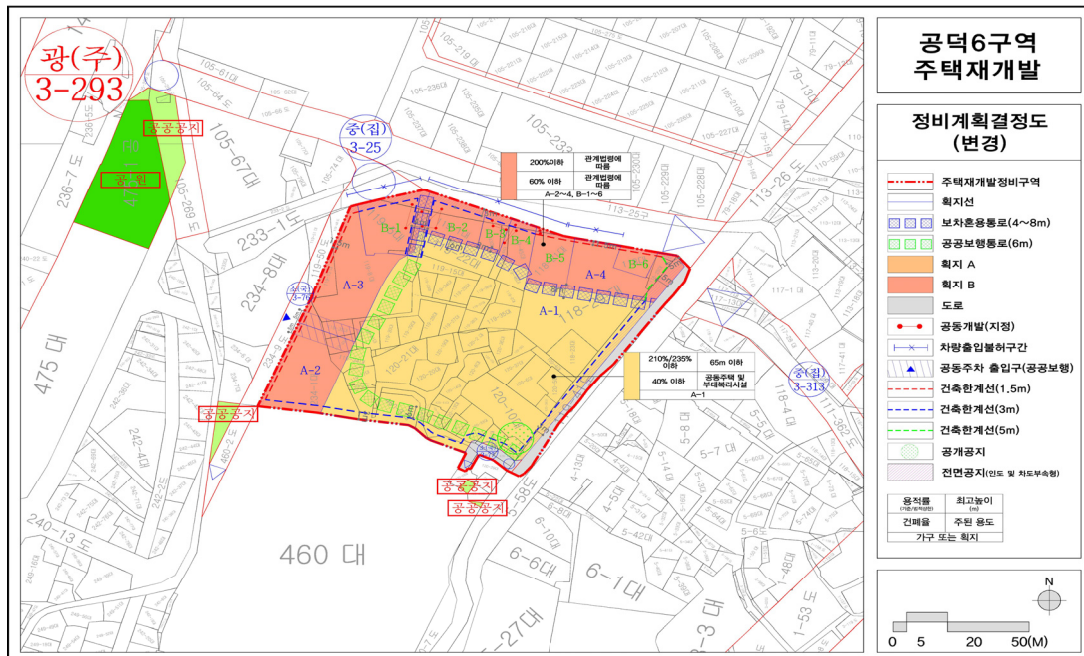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결정도(기정)



■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붙임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공고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정비계획 결정(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변경) 절차(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를 실시한 사항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박정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4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 ·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성동구 · 금천구 · 서대문구 · 구로구 관내 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 ·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그 명칭을 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공원(근린 · 주제 · 문화 · 소공원)명칭 제정 내역

연 번	구 분	위 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근린공원	송파구 문정동 481	20,856	문이공원	문정지구 제2호 근린공원
2	근린공원	송파구 장지동 393	10,250	송례공원	위례 8호 근린공원
3	주제공원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	8,811	오작교공원	왕십리가로공원
4	근린공원	송파구 문정동 653	36,638	소리공원	문정지구 제1호 근린공원
5	근린공원	송파구 장지동 889-1	12,210	위례별공원	위례신도시 제8호 근린공원
6	근린공원	금천구 독산1동 448-15	16,530	금나래중앙공원	-
7	근린공원	서대문구 북아현동 113-61	39,033.1	북주산근린공원	북주산근린공원
8	문화공원	구로구 오류동 299-29	7,510	오류역문화공원	-
9	소 공 원	서대문구 홍은동 445-3	1,375	하늘소공원	홍은12구역 소공원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38) 및 송파구 공원녹지과(☎02-2147-3394), 성동구 공원녹지과(☎02-2286-5655), 금천구 공원녹지과(☎02-2627-1653), 서대문구 공원녹지과(☎02-330-8646), 구로구 공원녹지과(☎02-860-2321)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지역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2019.1.3.)로 공고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현황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나. 지정구역 면적 : 26,337,279.36㎡

- 추가 지정지역 :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등 4개소 (145,942.6㎡)

- 기존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55호(2015.8.27.)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지형도면 고시지역 (26,191,336.76㎡)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추가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	증)81,970.8	81,970.8	
추가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 일원	-	증)46,727.6	46,727.6	
추가	당산동1동 110번지 일원	-	증)15,764.0	15,764.0	
추가	신설동 131-50번지 일원	-	증)1,480.2	1,480.2	
기존	서울특별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26,191,336.76	-	26,191,336.76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계		26,191,336.76	증)145,942.6	26,337,279.36	

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역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붙임 : 추가 지정지역 지형도면

- 기존 지정지역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55호(2015.8.27.)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main/index.js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 주택→ 새소식]3. 기타사항 :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 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호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 2016.8.11.】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오류동 172-2번지 일대	-	12,746.5	12,746.5	-

2. 정비계획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2,746.5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85.8	5.4	-
	도 로	685.8	5.4	-
획 지	소 계	12,060.7	94.6	-
	획 지1	10,903.7	85.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	1,157.0	9.1	공공청사 (주민센터, 보건지소, 경로당)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 가능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746.5	-	12,746.5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746.5	감)12,060.7	685.8	5.4	도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157.0	1,157.0	9.1	획지2
	준주거지역	-	증)10,903.7	10,903.7	85.5	획지1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0	오류동 187-5	오류동 183-1	일반 도로	-	서고 341 (78.07.08)	

2)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오류동 184-10번지 외1필지	-	증)1,157.0	1,157.0	-	-오류2동 주민센터 ※ 경로당 포함 (구로구청장)

- ※ 공공청사(토지 및 건축물)은 구로구청으로 귀속되며, 구로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연면적은 향후 토지가,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공동이용시설 및 커뮤니티지원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 일대	-	증) 176.8	176.8	
	어린이집		-	증) 253.6	253.6	
	어린이놀이터		-	증) 690.0	690.0	
	작은도서관		-	증) 285.8	285.8	
	소 계		-	-	1,406.2	
커뮤니티 지원시설	휘트니스센터		-	증) 329.2	329.2	
	문화센터		-	증) 421.1	421.1	
	주민카페		-	증) 485.9	485.9	
	소 계		-	-	1,236.2	

- ※ 커뮤니티지원시설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말하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주차장 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며, 세부면적 및 시설의 종류는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0,903.7	획지1	10,903.7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일대	48	-	-	48	-	-
		1,157.0	획지2	1,157.0	구로구 오류동 184-10번지 외1필지	1	-	-	1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 주택	10,903.7	획지1	10,903.7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430이하	78m이하 /26층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 구역	1,157.0	획지2	1,157.0	구로구 오류동 184-10번지 외1필지	공공청사	50이하	250이하	건축법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429세대(공공임대주택 170세대, 일반분양 259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세대수(세대)	세대비율(%)	비고
					합 계		429	100.0	-
					분양	소 계	259	60.3	-
						44㎡	67	15.6	-
						59㎡	16	3.7	-
						74㎡	48	11.2	-
						84㎡	128	29.8	-
					공공임대	소 계	170	39.7	-
						44㎡	117	27.3	-
						59㎡	53	12.4	-
패키지 허용용적률					●사업시행인가시 공공임대주택공급(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및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5가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키지)허용용적률 미부여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430%				
					구분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계획 수립기준		
					공공임대주택공급		· 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이상(115%이상)		
					필수 항목 (4개)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 제7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할 것		
						커뮤니티지원시설	·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에너지효율건축물	·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친환경건축물	·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인증								

패키지 허용용적률	선택항목 (1개)	신재생에너지사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4.5%(공동주택)이상, 7%(일반 건축물)이상
		공공기여방안	-
		역사문화보전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기타계획	· 전면공지 - 오류로(중로 2-175호선) 경계부 : 보도형 2m, 오리로 10길(소로 2-2호선) 경계부 : 보도형 2m - 서해안로 20길(소로 2-1호선) 동측 및 서측 경계부 : 보도형 2m ※ 전면공지 내 오리로 10길(소로 2-2호선) 및 서해안로 20길(소로 2-1호선) 교차지 점 일부 도로 가각 정리 포함		

3) 상한용적률

구 분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등)	획지2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환산+대지면적)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2,746.5㎡	10,903.7㎡	1,157.0㎡	1,750.1㎡	－	－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 1,103.1㎡(건축물 토지환산 면적) + 647.0㎡(대지면적) = 1,750.1㎡(종상향 면적 대비 14.5%) ※ 종상향 면적 : 12,060.7㎡(획지1+획지2)					
패키지 허용용적률 계획	■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 430%(패키지 허용용적률 계획 적용)					
	구분		건축계획(안)			
	공공임대주택공급		● 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이상 (115%이상) ⇒ 법정:12,539.3㎡(115.0%이상) < 계획:12,586.6㎡(115.4%)			
	필수 항목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에 적합할 것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플랫 슬라브 구조” 로 계획			
		커뮤니티 지원시설	● 커뮤니티지원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의 3%이상) ⇒ 휘트니스센터, 문화센터, 주민카페(법정:1,188.5㎡ < 계획:1,236.2㎡)			
		에너지 효율 건축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 평점합계 86점 이상,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친환경 건축물	⇒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인증			
	선택 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4.5%(공동주택)이상, 7%(일반건축물)이상			

상한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430%,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115%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315% × (1 + 1.3 × 0.5814 × 0.1786) = 357.5% = 357.5% + 115.0%(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 472.5% → 430% 적용(계획:429.91%)
α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1,750.1㎡ ÷ (12,746.5㎡ - 685.8㎡ - 1,157.0㎡ - 1,103.1㎡) = 0.1786
가중치	■ 가중치 = 공공시설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250% ÷ 430% = 0.5814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근경, 중경,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저감 방안(세부계획 일부) -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 망설치, 사업대상지내 살수설치,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임	-
재난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294세대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교육 환경 보호 계획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조망 및 일조는 조망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겠으며, 일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조기준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겠음 •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도록 하겠음(현재 사업으로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자.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완화 받는 용적률을 제외하여 건립되는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 2)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건립위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45㎡ 이하	45~60㎡ 이하	합계	
오류동 172-2번지 일대	기준	완화된 용적률의 1/2 12,539.3㎡이상 (115.0%이상)	사회혼합 (Social Mix)	170	60~80% 이상	20~40% 이하	100%	부속토지 총 면적 : 3,061.8㎡
	계획	12,586.6㎡ (115.4%)			117세대 (68.8%)	53세대 (31.2%)	170세대 (100.0%)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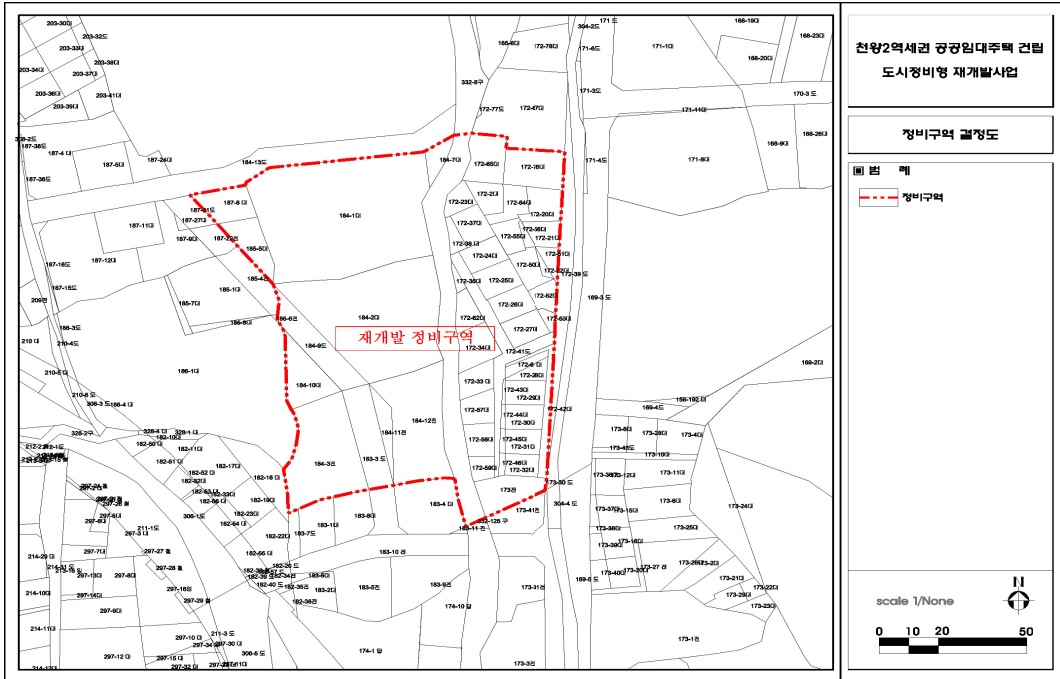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 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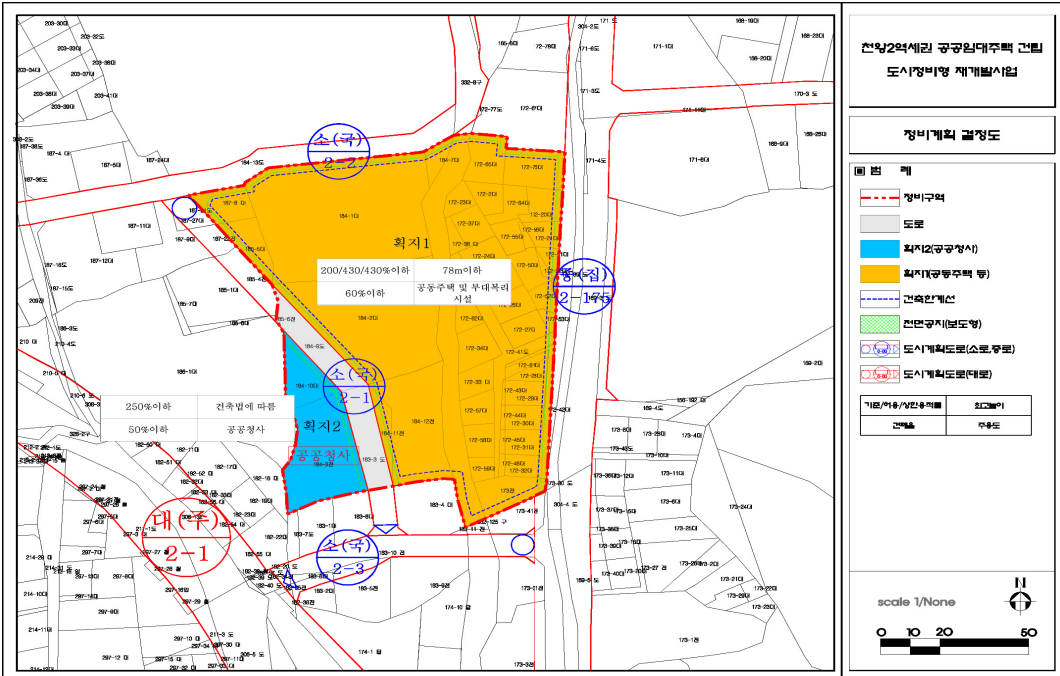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2133-7071) 및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6)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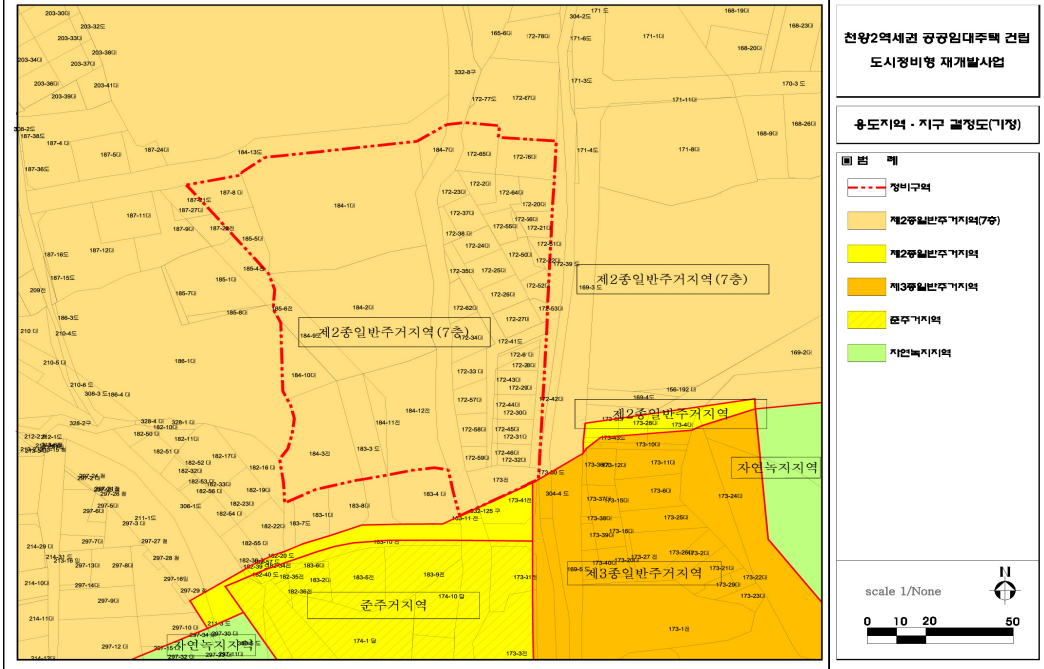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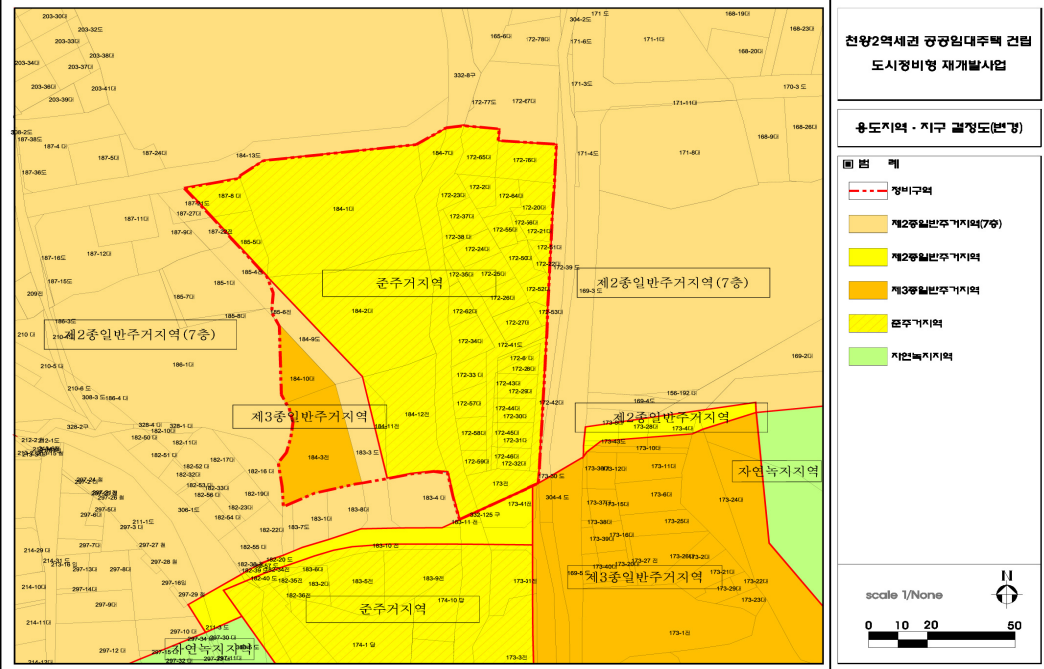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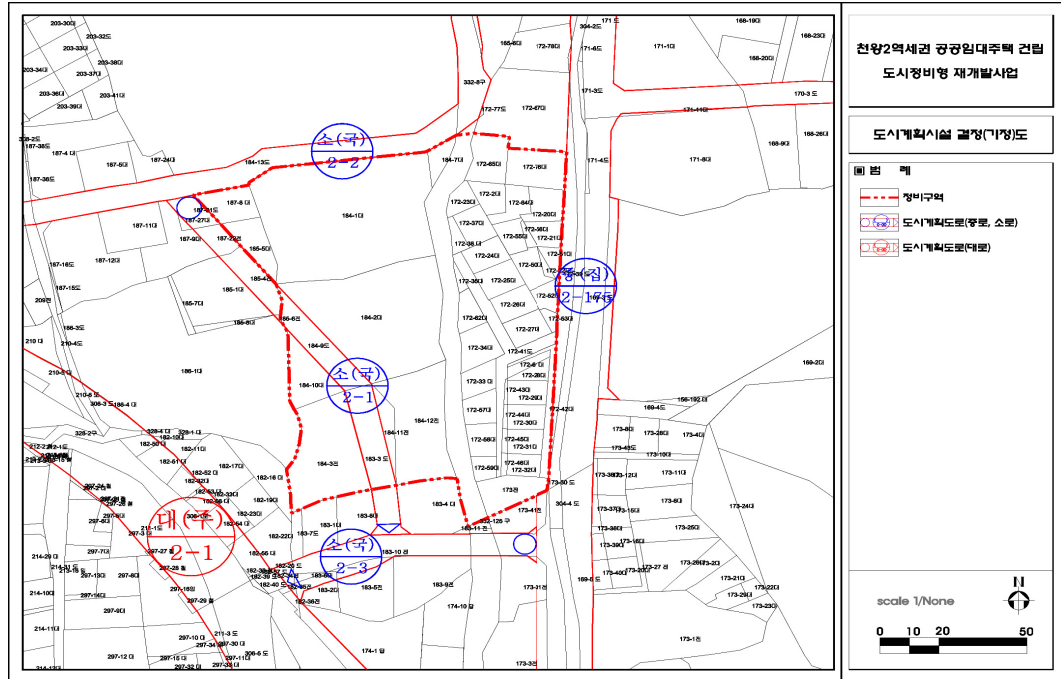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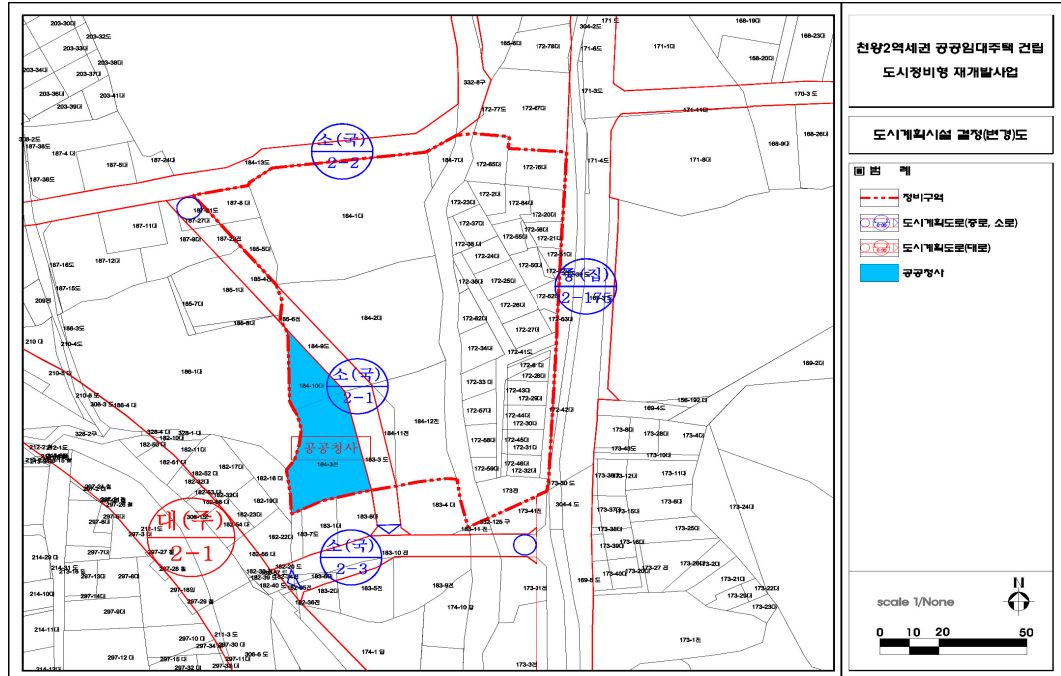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4호(2017. 6. 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1호(2017. 7. 1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성동구공고 제2018-1089호(2018. 12. 2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한 “금호로 확장공사(금호동2가 220-1~222-2)”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20-1~222-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금호로 확장공사(금호동2가 220-1~222-2)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로확장 폭19→25m, 연장 41m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12.31.까지
- 2)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0.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따로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2133-8083) 및 성동구청 토목과(☎2286-5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호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3호(2017.12.14.)로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4호(2017.12.14.)로 사업계획 승인된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I.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변경)

- 지정 :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변경없음)

○ 면 적(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5,232.0 m ²	감) 22.1 m ²	5,209.9 m ²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 변경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

- 지정 :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기정	시행자의 성명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정수성
		주식회사 이랜드건설 대표이사 김일규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7 (창전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802호
	법인등록번호	110111 - 0365797
		110111 - 0841688
변경	시행자의 성명	주식회사 이베데스다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박영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 - 6599257

■ 변경사유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진행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를 변경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1) 토지세목조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자번			(㎡)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기정	19	8	대	4,432.1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1/1	(주)신한은행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00원 (채무자: (주)이랜드월드)			
	(주)외환은행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0원 (채무자: (주)2001아울렛)				
											주식회사 이베데스다 제일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1/1	(주)농협은행
2	기정	창전동	129	1	도	13.0	김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8	2/9	국 (분당세무서)	-	압류		
							김수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79 탄현마을 1201-1204	2/9	없음	-	-		
							김지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8	2/9					
							박정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5 (구의동)	3/9					
	변경							주식회사 이베데스다 제일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1/1	(주)농협은행	-	신탁	2018. 05.31
3	기정	136	1	대	26.0	김도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구인길 33-10	15/22	없음	-	-			
						김숙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48	1/22	서울시 마포구	-	압류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5 (구의동)	18/198				
						유지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65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04-702	4/22	없음	-	-	
						주식회사 이베데스다 제일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1/1	(주)농협은행	-	신탁	2018. 05.31
4	변경 없음	15	2	도	23.0	김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5-4	1/1	없음	-	-	
5	변경 없음	12	1	도	713.3	서울특별시 마포구		3207/3 545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78-1, 3층(구수동, 성보빌딩)	338/35 45	없음	-	-	
6	변경 없음	128	3	대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1/1	없음	-	-	
계					5,209.9	-						

■ 변경사유: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원	5,232.0	감) 22.1	5,209.9	-

7. 기타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익사업 지정 및 인정함.

8.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4)와 마포구청 4층 주택과(02-3153-93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 명 칭(변경)

- 지정 :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변경없음)
- 면 적(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5,232.0 m ²	감) 22.1 m ²	5,209.9 m ²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 변경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기정	시행자의 성명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정수성
		주식회사 이랜드건설 대표이사 김일규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7 (창전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802호
	법인등록번호	1.1.0.1.1.1 - 0.3.6.5.7.9.7
		1.1.0.1.1.1 - 0.8.4.1.6.8.8
변경	시행자의 성명	주식회사 이베데스다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박영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 - 6.5.9.9.2.5.7

■ 변경사유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진행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를 변경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택건설용지	4,264.0	감) 26.9	4,237.1	81.3	임대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968.0	증) 4.8	972.8	18.7	도로용지
합 계	5,232.0	감) 22.1	5,209.9	100.0	-

※ 도로는 설치 및 조성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5.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1) 수용인구 : 746명 내외
2) 주택건설계획 : 589세대

<기정>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26A TYPE	44	7.5	88	11.8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6B TYPE	12	2.0	24	3.2	
	26C TYPE	4	0.7	8	1.1	
	소 계	60	10.2	120	16.1	
기업형 임대주택	17A TYPE	398	67.6	398	53.4	
	17B TYPE	60	10.2	60	8.0	
	29A TYPE	20	3.4	53	7.1	
	29B TYPE	10	1.7	27	3.6	
	29C TYPE	9	1.5	24	3.2	
	29D TYPE	32	5.4	64	8.6	
	소 계	529	89.8	626	83.9	
합 계		589	100.0	746	100.0	세대당 1.3명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변경>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26A TYPE	56	9.5	112	15.0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6B TYPE	4	0.7	8	1.1	
	소계	60	10.2	120	16.1	
기업형 임대주택	17A TYPE	458	77.8	458	61.4	
	29A TYPE	30	5.1	80	10.7	
	29B TYPE	9	1.5	24	3.2	
	29C TYPE	32	5.4	64	8.6	
	소계	529	89.8	626	83.9	
합계		589	100.0	746	100.0	세대당 1.3명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 변경사유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타입별 세대수 및 수용인구 변경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1) 도로(변경없음)
- 2) 공공시설(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대	건축연면적 1,738.16	감) 110.48	건축연면적 1,627.68	서울시에 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서울시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변경사유: 측량성과 반영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연면적 일부변경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불입](도면게재생략)

[불입]

1. 도시·군관리계획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원	5,232.0	감) 22.1	5,209.9	-

■ 변경사유: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5,232.0	감) 22.1	5,209.9	100.0
준주거지역	4,264.0	감) 26.9	4,237.1	81.3
제3종일반주거지역	968.0	증) 4.8	972.8	18.7

■ 변경사유: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변경없음)

(2) 공공시설(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대	건축연면적 1,738.16	감) 110.48	건축연면적 1,627.68	서울시에 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서울시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연면적 일부변경

(3)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4,264.0	감) 26.9	4,237.1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획지 면적 변경

(2)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바) 공공기여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기부채납 내용	기부채납 면적(㎡)			비 고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 임대주택	4,249.08 (건축연면적)	증) 175.79	4,424.87 (건축연면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524.36	감) 10.31	514.05	9.87%
기반시설 (도로)	257.00	-	257.00	도로 설치 및 제공	257.00	-	257.00	4.93%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1,738.16 (건축연면적)	감) 110.48	1,627.68 (건축연면적)	사회복지시설 및 부속토지	587.99	감) 39.24	548.75	10.53%

주) 전체 구역면적(5,209.9㎡)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 및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연면적 및 기부채납 면적 일부변경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자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종류 및 내용	
1	가정	19	8	대	4,432.1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1/1	(주)신한은행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00원 (채무자: (주)이랜드월드)	
	변경					주식회사 이베데스드제 일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1/1	(주)환은은행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0원 (채무자: (주)2001아울렛)	
2	가정	129	1	도	13.0	김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8	2/9	국 (분당세무서)	-	압류	
						김수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79 탄현마을 1201-1204	2/9	없음	-	-	
						김지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8	2/9				
						박정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5 (구의동)	3/9				
	변경					주식회사 이베데스드제 일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1/1	(주)환은은행	-	신탁	2018. 05.31
3	가정	136	1	대	26.0	김도현	충청북도 보은군 정안면 구인길 33-10	15/22	없음	-	-	
						김숙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48	1/22	서울시 마포구	-	압류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자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박정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5 (구의동)	18/198	없음	-	-	
						유지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65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04-702	4/22				
						주식회사 이베데스드제 일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1/1	(주)농협은행	-	신탁	
4	변경 없음					김방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5-4	1/1	없음	-	-	
5	변경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3207/3545	없음	-	-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78-1, 3층(구수동, 성보빌딩)	338/3545				
6	변경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1/1	없음	-	-	
계					5,209.9	-						

■ 변경사유 :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변경

3) 토지취득 방법(변경없음)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 로	마포구 창전동 12-1번지 외 4필지	968.00㎡	증) 4.8㎡	972.8㎡	- 1개 노선(일반도로(소로)) - 현황도로 확장 및 재정비 - 조성 후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1,738.16㎡ (건축연면적)	감) 110.48㎡ (건축연면적)	1,627.68㎡ (건축연면적)	- 위치 : 지상1층 - 건축물 및 부속토지 기부채납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 및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연면적 일부변경

2) 계획기준 및 근거(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32.0	감) 22.1	5,209.9	100.0	-	-	-
주택건설용지	4,264.0	감) 26.9	4,237.1	81.3	자체사용	승인후	-
기반시설용지	968.0	증) 4.8	972.8	18.7	서울시	승인후	일부 공공기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4호(2017.12.14.)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 변경 :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기정	명 칭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정수성
		주식회사 이랜드건설 대표이사 김일규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7 (창전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802호
변경	명 칭	주식회사 이베데스다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박영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2020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일원

나. 대지면적(변경)

- 기정 : 4,264.00㎡

- 변경 : 4,237.10㎡

다. 건폐율(변경)

- 기정 : 69.45% (건축면적: 2,961.52㎡)

- 변경 : 69.70% (건축면적: 2,953.38㎡)

라. 용적률(변경)

- 기정 : 475.89%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0,291.87㎡)

- 변경 : 477.26%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0,222.02㎡)

마. 용 도(변경없음) : 공동주택(공공임대 60세대/민간임대 529세대),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 시설

바. 규 모(변경)

- 기정 : 2개동, 지하5층/지상15~16층, 연면적 35,270.53㎡

- 변경 : 2개동, 지하5층/지상15~16층, 연면적 35,383.51㎡

사. 의제처리사항(변경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6. 기타사항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촉진지구 지정 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촉진지구 지정 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관련 권역설정 및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고시

건축법 제2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관련하여 권역설정 및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1. 권역 설정

○ 4개 권역

구분	권역명	해당 자치구
1	도심·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2. 등록 신청에 관한 기준

-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소재지가 속해있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 가능함.
- 건축사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타권역으로 등록을 원하는 자는 20%이내에서 해당구 건축사 협회에서 협의하여 지정 가능하며, 1년이내에 해당 등록지로 건축사사무소 이전 조건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20호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13개 사업유형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1	문화·관광도시	• 서울 관광자원 발굴, 남산 및 한강 관광 코스 탐방활동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차(茶) 문화체험, 궁궐 순례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간 문화화 등
2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 •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이동권보장
3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 젠더폭력(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성평등 문화 만들기 • 저소득 비혼모 및 한부모 가정 지원
4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인생이모작지원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무료급식제공 및 봉사활동 • 무연고자 장례 지원
5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청소년에게 글로벌 문화 경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 청소년 자율 봉사조직 구성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
6	시민의식 개선	• 기초질서 지키기, 공동체 의식함양, 계층간 갈등해소 및 세대간 이해증진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및 도덕성 함양, 세대통합을 위한 예절교육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등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7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및 검사, 투약 • 이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이주노동자 보호 및 다문화 사회 프로젝트 추진 등
8	NPO활동 지원	• 시민단체 활동가 양성교육 •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활용 정보제공 등 시민사회 지원활동 • NPO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등
9	교통·안전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학교·성·가정 및 식품), 안전 불감증 해소 • 안전문화 교육·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
10	통일·안보	•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남북 사회통합 교육활동 •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활동, 통일·안보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11	북한이탈주민 지원	•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활동, 탈북자 정착 대안학교 및 역사문화 체험활동 • 탈북자 맞춤형 심리치료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탈북자 진로교육 등

12	환경보전·자원절약	• 자원재활용, 자연생태 체험학습,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13	기타 공익사업	• 위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19.1.25.)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9년 3월~11월

4. 신청형태 : 1개 단체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13개 사업유형	사업별 3천만원 이하	○ 서류 심사 - 1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 심사(개별) - 2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분야별) - 3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결정)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1. 14.(월) 09:00~2019. 1. 25.(금) 18:00까지
※ 마감일(2019.1.25)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 (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 인터넷(<https://ssd.wooribank.com/seoul>) 신청·접수(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인터넷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1. 11.(금) 14:00,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 결과발표 : 2019. 3. 7.(목)예정 서울시NGO협력센터(내손안에서울>커뮤니티)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등을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내손안에서울>커뮤니티>서울시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2133-6562, 6559, 6563)으로 문의바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3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8-133	(재)연필장학재단 (대표:이동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56 알파빌딩4층	o. 좋은 인성과 바른 사고의식을 가진 학생 장학지원	250 (현금)	전국	2019.1.1.~ 2019.12.31
						2019.1.1.~ 2020.12.31.
2018-134	(사)시민 (대표:임현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o.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프로젝트 지원	999 (현금)	전국	2019.1.1.~ 2019.12.31
						2019.1.1.~ 2020.12.31.
2018-135	재향군인회 (대표: 김진호)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115(성수동 1가, 에스콰이어빌딩)	o. 한국전쟁 미군참전용사 추모의벽 건립기금 지원	500 (현금)	전국	2018.12.25.~ 2019.12.24
						2018.12.25.~ 2020.12.24.
2018-136	(사)굿네이버스 (대표:조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o. 아동의 권리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200 (현금)	전국	2019.1.1.~ 2019.12.31
						2019.1.1.~ 2020.12.31.
2018-137	(사)라이프오브더칠드런 (대표:권호경)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1길 39,400호	o. 국내외 지역 빈곤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급식, 교육 및 보건의료지원	1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19.1.1.~ 2019.12.31
						2019.1.1.~ 2020.6.30.
2018-138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대표:박남수)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1208호	o. 태화관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독립선언 광장조성 기금지원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및 해외	2018.12.25.~ 2019.12.24
						2018.12.25.~ 2020.12.24.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32호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용자지원 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동 조례 제53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용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1. 용자신청 대상자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2. 용자 용도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3. 용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
용자한도	60	30 (최대 4가구)	30 (세대당)	30 (세대당)	100	50 (최대 4가구)
	보증				담보	
적용금리	0.7%					
용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용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용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 시공자에게 지급					

4. 2019년 용자예산 : 3,000,000천원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5. 용자 조건

가. 담보 및 보증서 용자

- 용자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담보 용자)
- 보증기관의 보증서

나. 용자실행

- 주택개량비용 및 주택신축공사비
- 용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직접 분할 용자

구 분	계약금(공사 착공시)	잔금(공사 완공시)
개량시 보증서 용자	-	100% 지급
신축시 부동산담보 용자	50% 지급	50% 지급

다. 용자신청인의 의무

- 주택개량비용 용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는 주택개량 공사 완공 이후 임대차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조건

※ 주택개량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 자치구 용자담당부서

6. 용자 기간

주택개량비 및 신축 공사비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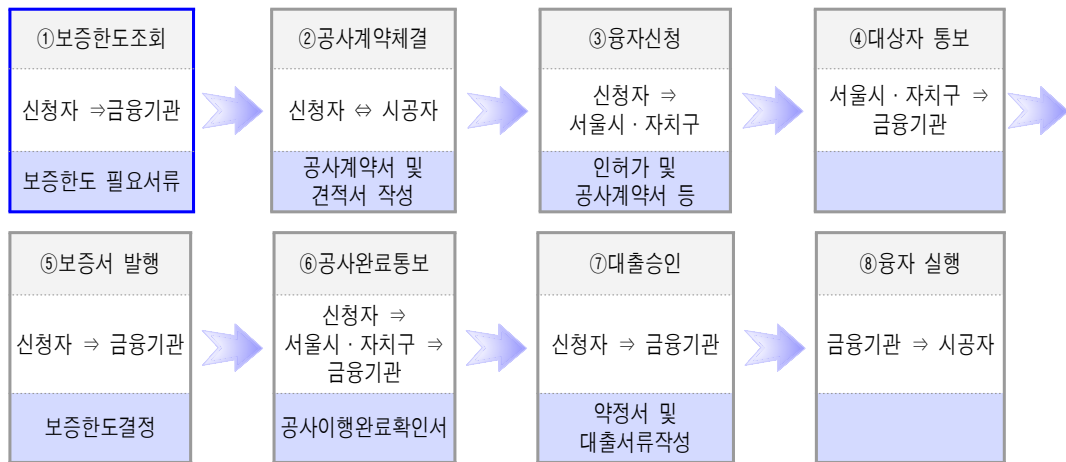
※ 단, 해당 주택 매매시(권리변동)전액 일시상환

7. 적용금리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 0.7%

※ 채권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담보설정비용, 보증료는 용자지원 수탁 기관에서 부담

8. 용자 절차



9. 용자업무 수탁기관 : (주)우리은행

10. 용자결정의 취소

- 가. 용자금을 주택개량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1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 까지)

12. 신청서류

- 개량 : 용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 전 사진(공사완료 후 사진)
- 신축 : 용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건축허가 신고필증, 착공신고서

13. 기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2133-7256) 또는 자치구 주택개량 용자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주택개량 용자 담당부서

자치구	부서	연락처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64
강남구	주택과	3423-6075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2620-3452
광진구	주택과	450-7698
	도시계획과	450-7693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3298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3425-5996
영등포구	주택과	2670-3538
		2670-35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59
	건축과	351-7502
서대문구	주택과	330-1959
마포구	주택과	3153-9322
종로구	주택과	2148-2622
	도시개발과	2148-2687
중구	주택과	3396-5723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62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93
동대문구	건축과	2127-4764
성동구	주거정비과	2286-6578
노원구	도시재생과	2116-3918
종량구	도시개발과	2094-2203
	주택과	2094-2136
	건축과	2094-2295
강서구	주택과	2600-6150
금천구	도시재생과	2627-1567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820-1137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63
	주택과	2091-3513
관악구	도시재생과	879-6461
서초구	건축과	2155-6821
송파구	주거재생과	2147-288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33호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용자 이차지원 계획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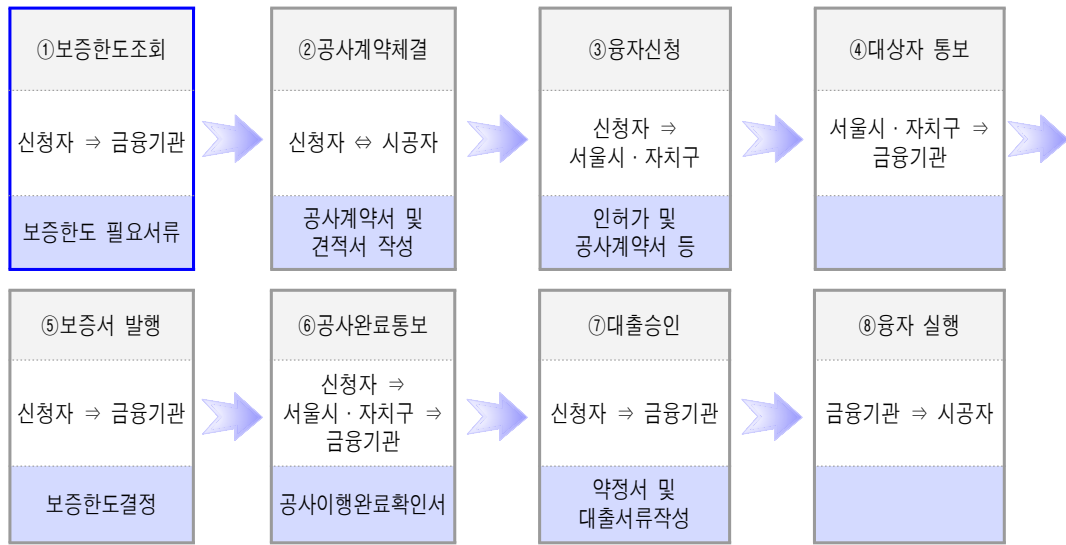
저층주거지 내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용자 이차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1. 용자 대상자 : 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하는 토지등소유자
2. 용자 내용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개량 및 신축 건축 공사비
3. '19년 예산 : 70,000천원
4. 용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용자한도	60	30 (최대 4가구)	30 (세대당)	30 (세대당)	100	50 (최대 2가구)
	보 증				담 보	
	－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개량비용 용자한도의 1/2(조합설립 이전단계만 지원)					
용자조건	－ 용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용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5. 용자 지원 시기
 - 개량 : 공사를 완공한 때에 용자금 전액을 용자
 - 신축 : 공사를 착공한 때 용자금의 50%, 완공한 때 용자금의 50%을 용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6. 용자 기간 : 5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 단, 해당 주택 매매 시(권리변동) 전액 일시상환
7. 이차 지원 : 적용금리의 연2.0%은 서울시가 지원, 나머지 차액은 용자신청인 부담
8. 용자 절차



9. 용자업무 수탁기관 : (주)우리은행

10.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 까지)

11. 신청서류

- 개량 : 용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 전 사진(공사완료 후 사진)
- 신축 : 용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건축허가 신고필증, 착공신고서

1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2133-7256) 또는 자치구 주택개량 용자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주택개량 용자 담당부서

자치구	부서	연락처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64
강남구	주택과	3423-6075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2620-3452
광진구	주택과	450-7698
	도시계획과	450-7693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3298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3425-5996
영등포구	주택과	2670-3538
		2670-35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59
	건축과	351-7502

서대문구	주택과	330-1959
마포구	주택과	3153-9322
종로구	주택과	2148-2622
	도시개발과	2148-2687
중구	주택과	3396-5723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62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93
동대문구	건축과	2127-4764
성동구	주거정비과	2286-6578
노원구	도시재생과	2116-3918
중랑구	도시개발과	2094-2203
	주택과	2094-2136
	건축과	2094-2295
강서구	주택과	2600-6150
금천구	도시재생과	2627-1567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820-1137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63
	주택과	2091-3513
관악구	도시재생과	879-6461
서초구	건축과	2155-6821
송파구	주거재생과	2147-288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35호**

2018년도 제20차 건축물 미술작품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심의일시 : 2018. 12. 20.(목) 14:00 ~ 16: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20건 29작품 (조각 21, 회화 5, 부조 2, 미디어 1)

라. 심의결과 : 승인 9작품, 부결 20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20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에 대한 세부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	중구 남대문로2가 센터포인트명동	조각	개화		○	
2	영등포구 대림동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회화	Aggregation 18-JA001	○		
3	강서구 마곡지구 C9-3 푸리마타워	조각	넝쿨손-생명		○	
4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북위례 세제로병원	조각	군도-꿈꾸는 사람들		○	
5	종로구 신영동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각	황소의 꿈		○	
6-1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조각	Linear Scene		○	
6-2		조각	꿈꾸는 새		○	
7	중구 충무로1가 KT 서울중앙지사	조각	통하는 숲	○		미디어 조형 디바이스에 상 영될 콘텐츠(영상)도 작품 의 일부이므로 포함하여 심 의에 임하는 것이 원칙임. 작품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영상 또는 콘텐츠는 상영하지 않기를 권고함.
8	강서구 마곡지구 B7-1,2 마곡2차 대방디엠시티	조각	ETERNAL CUBE		○	
9	중구 신당동 신당 파인힐 하나유보라	조각	소나무 P-80		○	
10-1	강남구 역삼동 복합건축물	회화	획(Stroke Line)	○		
10-2		부조	풍경이 된 마을	○		
10-3		회화	씻가루 산수	○		
11-1	종로구 관훈동 대성산업부지	회화	유토피아		○	
11-2		부조	Strings Harmony		○	
11-3	특별계획구역	미디어	Digilog Meditatio		○	
11-4		회화	The Starry Night		○	
12-1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조각	The complemetary system	○		
12-2		조각	Timeless Nature	○		
12-3		조각	Leaves scene	○		
13	강동구 암사동 힐스테이트암사	조각	우리들의 모습		○	

14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SK VIEW	조각	Lollipop Cactus	○		
15	강서구 등촌동 경동 미르웰 양천향교2차	조각	Space 2018-사유		○	
16	강서구 마곡지구 C8-3 류마타워	조각	melody -아름다운 선을		○	
17-1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신축공사	조각	신화+2018		○	
17-2		조각	FLY THE BLUE		○	
18	강서구 마곡지구 C13-1,9 마곡사이언스타워2	조각	Rafting(래프팅) -꿈을 꾸다		○	
19	강서구 마곡지구 C9-5 마곡지웰타워	조각	Bit tree(빛 트리)		○	
20	강서구 마곡지구 C13-5,6 마곡그랑트윈타워B동	조각	새가 있는 풍경		○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44호
차량의 운행제한(변경) 공고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변경 제한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도로의 종류	서울특별시도
노 선 명	수색로 사천교(홍제천 횡단)
제 한 의 대 상	○ 현재, 운행제한을 총중량 30톤 초과차량에서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으로 변경함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 (건설기계 포함)
구 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446~ 남가좌동 102 (홍제천 횡단교량)
기 간	○ 2018. 12. . 00시 ~ 별도 공고시까지
이 유	○ 도로 구조의 보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방지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전화 02-300-8322)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전화 02-300-8374)
위 치 도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및 시설보수과 도면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45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2018.1월~7월, 2차)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8.12.28. ~ 2019.1.11.(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joaing@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부과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독촉 납부기한(2018.11.2.)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조근희, ☎02-2133-5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문(2018.1월~7월, 2차) 공시충달 대상명단

(단위:원)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미납기간	미납액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과세금액	가산금	제납금액 (가산금포함)
계	17건					194,100						
1	000196	01보3280	2018-01-05	1625	1800	9,000	조정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로13길	폐문부재	9,000	210	9,210
2	000223	55투0256	2018-03-12	1638	1800	4,000	(주)저스트엔지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수취인불명	4,000	90	4,090
3	000244	42스5465	2018-04-11	1723	1800	4,000	김인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보관기간경과	4,000	90	4,090
4	000248	63서9891	2018-04-17	1620	1800	5,000	임유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보관기간경과	5,000	110	5,110
5	000253	66투0413	2018-04-23	1713	1800	4,000	이병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50번길	폐문부재	4,000	90	4,090
6	000257	37기0645	2018-05-01	1048	1800	43,000	이진형	경기도 수원시 정안구 파장로69번길	보관기간경과	43,000	1,020	44,020
7	000258	59투2091	2018-05-01	1732	1800	2,000	오유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보관기간경과 민송불요	2,000	40	2,040
8	000259	50도3725	2018-05-01	707	1800	54,000	장준호	경기도 부천시 삼곡로24번길	폐문부재	54,000	1,280	55,280
9	000289	20스9126	2018-05-11	1740	1800	2,000	김대일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폐문부재	2,000	40	2,040
10	000271	53기5285	2018-05-15	1708	1800	1,000	정승호(1%), 정광석(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9길	보관기간경과 민송(특수)	1,000	20	1,020
11	000286	59투2820	2018-06-21	1735	1800	2,000	고대성(99%), 「(주)천 은개발중기(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55번길	보관기간경과	2,000	40	2,040
12	000236	57기1341	2018-06-29	1700	1800	4,000	전광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보관기간경과민송	4,000	90	4,090
13	000237	31기5001	2018-06-29	1715	1800	600	김홍국	대전광역시 동구 솔랑길	10월25일까지 보관후 민송불요	600	10	610
14	000300	01도0444	2018-07-04	1722	1800	1,500	김재광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신암길	폐문부재	1,500	30	1,530
15	000304	76기5415	2018-07-11	1731	1800	1,000	지동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응암로	폐문부재	1,000	20	1,020
16	000307	23스9673	2018-07-12	1716	1800	3,000	임숙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8길	폐문부재	3,000	70	3,070
17	000308	51투8207	2018-07-17	638	1800	54,000	김영복	서울특별시 관악구 철원로5길	보관기간경과민송	54,000	1,280	55,2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46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2018.11월)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8.12.28. ~ 2019.1.11.(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joaing@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향후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조근희, ☎02-2133-5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2018.11월) 공시송달 대상명단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	대표소유자 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1건					38,000			
1	000415	97도4204	2018-11-05	1137	1800	38,000	이종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47호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 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감리업 (S-2-542)	㈜주은에프에스 (1.1.0.1.1.1-5.4.0.6.7.7.6)	진은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8, 3층(성내동)	2018.12.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5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1. 등록 직인(등록사유 : 2019.1.1.字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부서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동북권사업과	동북권사업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9.1.1.	
	동북권사업과 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52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폐기 직인(폐기사유 : 2019.1.1.字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폐기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비고
동북권사업단	동북권사업단 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9.1.1.	
	동북권사업단 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54호

회계직인 폐기 및 신규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19. 01. 01. 조직개편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9. 01. 0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8.12.31.	2019. 01. 0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8.12.31.	2019. 01. 01. 조직개편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8.12.31.	2016. 01. 0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한옥건축 자산과	한옥건축자산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8.12.31.	2019. 01. 0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8.27.)로 공고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나. 지정구역 면적 : 26,337,279.36㎡

- 추가 지정지역 :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등 4개소 (145,942.6㎡)

- 기존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55호(2015.8.27.)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지형도면 고시지역 (26,191,336.76㎡)

다. 변경 지정 내용 : 관계도서(운영지침) 참조

2. 관계도서

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지침(변경)

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추가 지정지역

다. [참고1] 운영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라. [참고2] 기존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적용지역 지형도면

※ 공고문 및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main/index.jsp>)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 주택 → 새소식]

3.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2133-7102) 및 자치구 건축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
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이필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일시 : 2018-08-07 05:33 장소 : 강변북로(올림픽대교) 내용 : 인천98사5001(트레일러)차량 폭 0.29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9. 27.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8. 11. 30. 독촉일 : 2018. 12. 17.
김영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일시 : 2018-08-20 15:31 장소 : 신내I.C 내용 : 87노0910(카고)차량 높이 0.28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9. 27.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8. 11. 30. 독촉일 : 2018. 12. 17.
박진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일시 : 2018-08-21 13:41 장소 : 화랑로 내용 : 인천85바9830(카고)차량 폭 0.28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9. 27.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8. 11. 30. 독촉일 : 2018. 12. 17.
김태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일시 : 2018-08-22 14:03 장소 : 신설동 내용 : 81무7071(집게차)차량 높이 0.28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9. 27.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8. 11. 30. 독촉일 : 2018. 12. 17.
박수필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일시 : 2018-08-28 15:24 장소 : 천호대로 내용 : 광주88바9669(철스크랩)차량 폭 0.28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9. 27.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8. 11. 30. 독촉일 : 2018. 12. 17.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9. 1.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5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8 희망지사업 최종선정 결과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이전 주민모임·자치구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공모한 2018년도 희망지사업의 최종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장

1. 최종선정결과

유형	선정지역	신청면적	자치구	비 고
일 반 근린형 (10~15만㎡ 내외)	1. 다산동 7~18통 일대	155,464㎡	중 구	〈면적축소 조건〉 우리동네살리기로 전환
	2. 사근동 212~1번지일대	100,000㎡	성 동 구	-
	3. 쌍문1동 19~24통 일대	141,370㎡	도 봉 구	-
	4. 응암3동 8~26통 일대	141,370㎡	은 평 구	-
	5. 구로2·4동 일대	130,472㎡	구 로 구	〈면적축소 조건〉 주거지지원형 또는 우리동네살리기로 전환
	6. 중화2동 6~9통 일대	140,855㎡	중 랑 구	-
주거지 지원형 (5~10만㎡ 내외)	7. 번2동 148번지 일대	103,174㎡	강 북 구	-
	8. 북가좌2동 16,18,20,25,33,37통 일대	102,000㎡	서대문구	-
	9. 홍제1동 11통, 20~25통 일대	101,640㎡	서대문구	-
	10. 신월3동 192번지 일대	108,000㎡	양 천 구	-
	11. 개봉1동 138~59번지 일대	95,364㎡	구 로 구	-
	12. 신길5동 442번지 일대	64,073㎡	영등포구	-
	13. 천호3동 6~13통일대	100,000㎡	강 동 구	-
우리동네 살 리 기 (5만㎡ 내외)	14. 제기동 136번지 일대	55,000㎡	동대문구	-
	15. 은천동 634번지 일대	31,000㎡	관 약 구	-

※ 예비후보자(3) : 광진구 자양4동 63-1번지 일대, 양천구 목3동 5~17통 일대, 중랑구 망우본동 7통 일대

2.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 6929-3259, 6929-32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무직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복무관리 및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1,882명에서 2,151명으로 269명 증원(안 제7조 및 별표1)

나. 공무직 청렴 의무조항 및 위반 시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공무직 부패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

다. 객관적이고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는 ‘성희롱·성범죄’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 시 민간전문가 참여조항 신설(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2133-5568, FAX 2133-0773, E-mail:energizer9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1조(공고)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조직개편
○ 최초 사용일자 : 2019년 1월 1일
○ 공인등록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인	2.4cm × 2.4cm		없음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인	2.4cm × 2.4cm		없음

☐ 공인 폐기

- 공인폐기 사유 : 조직개편
○ 공인폐기 일자 : 2018년 12월 31일
○ 공인폐기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인	2.4cm × 2.4cm		없음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인	2.4cm × 2.4cm		없음

구 고 시

◆ 동대문구고시 제2018-12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고시 제1998-65호(1998.08.20.)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고시 제2018-95호(2018.11.0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18-1043호(2018.11.26.)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9년 1월 3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1-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다. 사 업 명 : 청량리 복합청사 신축

라. 사업의 규모 : 연면적 2,353.6㎡(지하 1층, 지상 4층)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3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2127-4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신동)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청량리동 복합철도 신축사업)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관리명세	
1	청량리동 51-4	대	80.3	동대문구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2	청량리동 51-5	대	608.2	동대문구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	청량리동 51-6	대	170.1	한영홍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10 303동 303호(명일동, 삼익아파트)				

물 건 조 서

-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신동)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청량리동 복합철도 신축사업)

연 번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규격 및 구 조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관리명세	
1	청량리동 51-6	근린생활 시설	목조	56.2	한영홍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10 303동 303호(명일동, 삼익아파트)				

영 업 권 조 서

-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신동)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연번	지 번	업종 명칭 소재지	상호 명칭 소재지	영업 종류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청량리동 51-6	일반음식점	한식 매점 풍년해물 탕	한식 매점	여명순	동대문구 청량리동 51-6	

◆ 노원구고시 제2018-14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547호(1989.09.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2018-1029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56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2.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56

3. 사업의 내용

- 면적 : 1,140㎡(공원:9,906.6㎡)
- 사업규모 : 지상3층 증축(64.51㎡) 및 리모델링(1,257.53㎡)

4.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6.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 마을공동체과(☎02-2116-0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대상지 위치도



□ 현황사진



◆ 서대문구고시 제2018-2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5호(1983.2.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7-5호(2017.1.1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7-63호(2017.4.27.)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변경사항(사업기간 연장)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대문구 홍제1동 315-30~167-2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폭 6m, 연장 142m]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2017.1.12.)로 부터 2년
- 변 경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2017.1.12.)로 부터 4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토목과(☎ 330-1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4호(1970.10.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 구로구고시 제2017-61호(2017.4.20)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구로구고시 제2017-95호(2017.6.2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로구고시 제2018-221호(2018.11.15.)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구로구공고 제2018-1673호(2018.11.2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한 『오류동 6-8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14~6-20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4m, 연장2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당초)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오류동 6-284	대	23	23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가마신로 245					
2		오류동 6-328	대	22	22	구로구	"					
3		오류동 6-359	대	5	5	구로구	"					
4		오류동 6-320	도	29	29	구로구	"					
5		오류동 6-360	대	50	50	구로구	"					
6		오류동 6-364	대	112	11	서동식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202					오류동 6-202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오류동 6-284	대	23	23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가마신로 245					
2		오류동 6-328	대	22	22	구로구	"					
3		오류동 6-359	대	5	5	구로구	"					
4		오류동 6-320	도	29	29	구로구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5	오류동 6-360	대	50	50	구로구	"						
6	오류동 6-364	대	11	11	서동식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202						오류동 6-202

별 건 조 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오류동 6-202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서동식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202				
		건물	시멘트블럭	2	창고						

◆ 동작구고시 제201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호(2002.01.09.)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09호(2003.12.15.)로 변경결정된 동작구 흑석동 4번지 일대 지하철9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919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동 작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철도 (9호선)	도시철도 (919정거장)	동작구 흑석동 4번지 일대	6,917	증)107	7,024	서고 제5호 (2002.01.09.)	환기구 이전 설치

나.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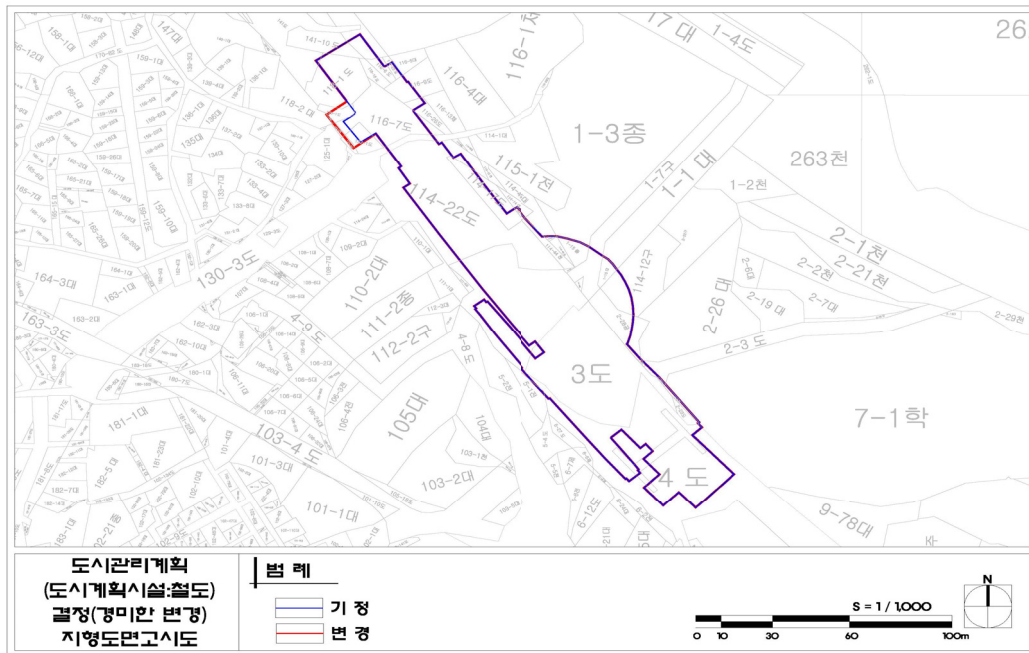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 도	○ 면적변경 - 당초 : 6,917㎡ - 변경 : 7,024㎡(증 107㎡)	○ 흑석7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현충로, 흑석로가 확폭되어 흑석역(지하철 9호선) 기존 환기구 위치를 보도 안쪽으로 이전

2.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지형도면(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559)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19-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 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7 외 1필지에 대한 차량출입불허구간 내 차량출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조서
 - 1) 결정(변경) 내용 : 차량출입불허구간 내 차량출입구 위치변경
 - 2) 결정(변경) 사유

： 대상지 전면 지하철환기구로 인한 차량출입 방해로 차량출입구 위치변경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4. 관계도면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강남구고시 제2019-2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2016.09.08.)로 결정(변경) 고시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0번지에 대한 가구 및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강 남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변경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항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가 구			계 획 내 용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대지면적(㎡)	
변경	G1	6,027.0	기정	강남구 삼성동 90(대)	518.4	-	
			변경	강남구 삼성동 90-A(대)	418.2	-	
				강남구 삼성동 90-B(대)	1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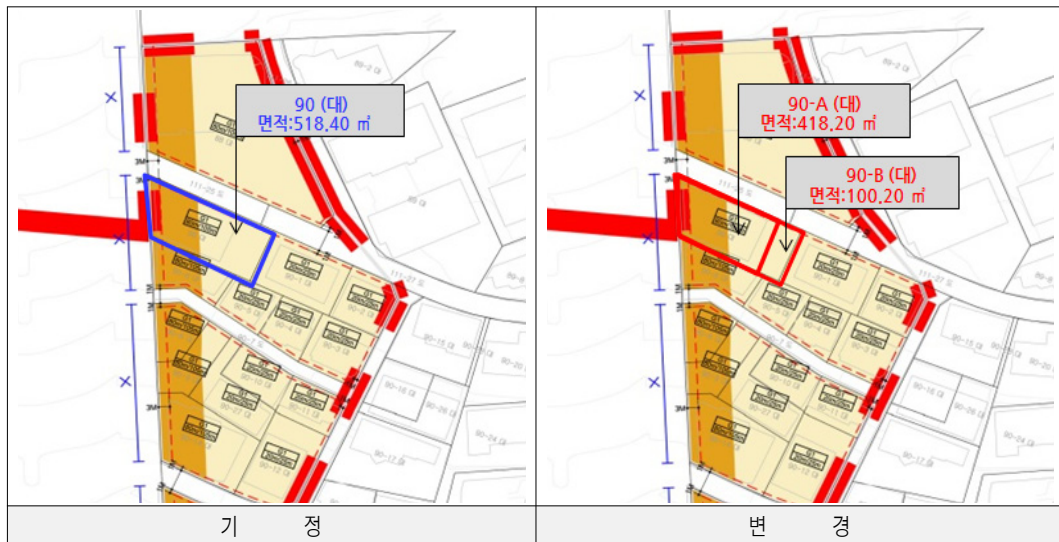
○ 결정(변경) 사유 : 강남구 삼성동 90번지 대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강남구고시 제201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5-265호(2015.9.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돌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169호(2018.11.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2018-1953호(2018.12.13.)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세곡동 산1-1번지 등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돌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당초 32,540㎡, 변경 43,968㎡ (현황측량 결과 등 반영)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 성 명 : 강남구청장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붙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3423-6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1	세곡동 산1-1번지	임야	25,644	15,249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위탁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 남산그린빌딩 19층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수탁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	울현동 산10-1번지	임야	54,745	28,426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위탁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 남산그린빌딩 19층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수탁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	세곡동 93-4번지	전	534	10	조계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325-7			
					조경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57, 105동 1304호(반도유보라2차아파트)			
					이규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61 자양2차현대아파트 313호			
					이성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61 자양2차현대아파트 313호	박현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95 한양아파트 5-701	근저당권자
					이성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61 자양2차현대아파트 313호			
					이성애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70 화성파크프레지던트 201-307			
					정정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57, 105동 1304호(반도유보라2차아파트)			
					조재석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57, 105동 1304호(반도유보라2차아파트)			
					조희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6, 에이동 1701호(우동, 한화꿈에그린센텀)			
					김동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340			
4	울현동 157	전	377	283					

◆ 송파구고시 제2019-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1호(2012. 7. 6)로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0 (2017. 6. 14)로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오금공공주택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공공주택지구 주차장용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사업의 명칭 : 서울오금공공주택지구 주차장용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토지면적 : 799㎡
- 건물 연면적 : 6,594.98㎡
- 건물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 주차대수 : 59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주)대장 대표 김태현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57길 13, 3층(목동)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9년 1월
- 준공예정일 : 2020년 4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 계											
1	오금동	99-5 일원		799		(주)대장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57길13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 송파구청 건축과 및 도시계획과 사무실에 관련도서 일체를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의 송파구청 건축과 ☎:02-2147-3040, 도시계획과 ☎:02-2147-2995)

구 공 고

◆ 성북구공고 제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시고시 제2010-49호(2010.06.24.)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성북구고시 제2017-38호(2017.03.09.)로 실시계획 고시, 성북구고시 제2017-45호(2017.03.2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성북구고시 제2018-47호(2018.04.26.)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동소문동7가 5~7-1간 도로 확장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인가	사업기간
동소문동7가 5 ~ 7-1간 도로확장공사	동소문동7가 5 ~ 7-1	B = 15m L = 35m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38호 (2017.03.09.)	2017.03.09. ~ 2018.12.21.

라.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도로과에 비치)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노원구공고 제2018-1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우리구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시행한 『수학문화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에 대한 관계서류는 노원구청 토목과(☎:2116-41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3일

노 원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 내역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 업 시행자
수학문화관 주변 도로개설사업	노원구 중계동 157-60~중계동 453-6	도로개설 B= 6.0m L= 60.0m	2018.6.21~ 2018.12.28	노원구고시 제2018-127호 (2018.12.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나. 공고방법 : 시보 게재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도로개설현
황사진



◆ 강동구공고 제2019-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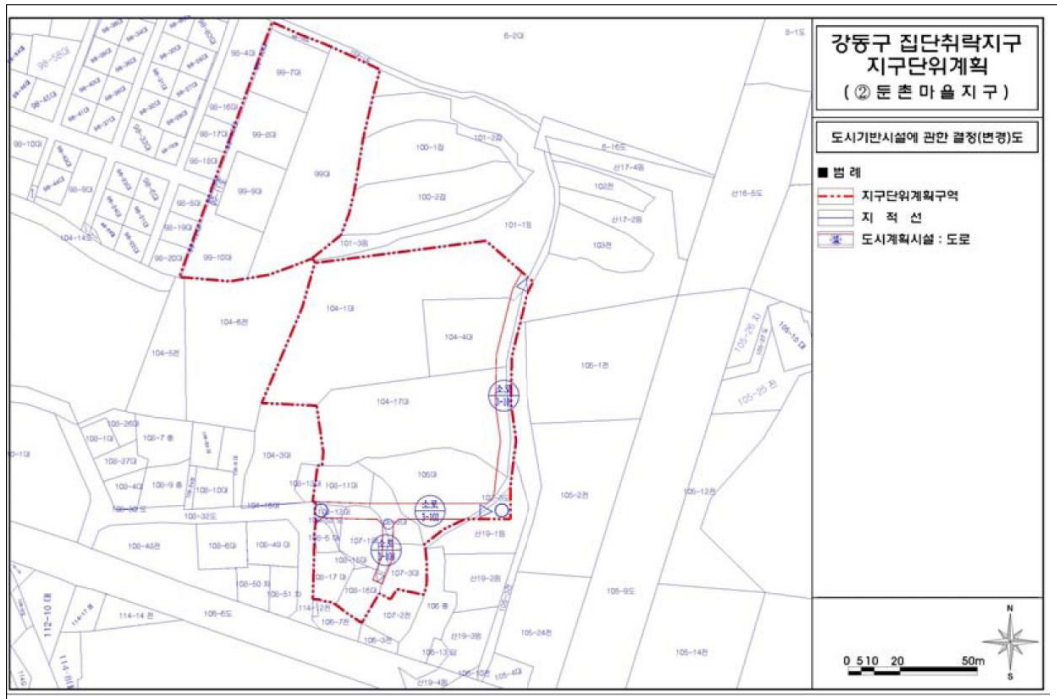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7호(2013. 5.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공고 제2016-1329호(2016. 11. 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되어 강동구고시 제2016-183호(2016. 12. 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완료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3일
강 동 구 청 장

사 업 명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지	사업시행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둔촌동 105~105-3간 (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6-183호 (2016.12.15.)	둔촌동105 ~ 둔촌동105-3	강동구청장	도로확장 (B=4~6m, L=125m)	2018. 8. 6. ~ 2018. 12. 17.

위 치 도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1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61, 마포구 현석동 218
 - 면 적 : 1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열수송관 보수를 위한 굴착공사(H=1.7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8.12.26. ~ 2019.01.24.(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정 정

◆ 서대문구고시 제2018-196호 정정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정사항

서울시보 제3498호(2018.12.27.)면에 게재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 대 문 구 청 장

【정정 전】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18-1139호(2018.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홍은2동 190-15~190-1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정정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06호(1974.8.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18-1140호(2018.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홍제3동 264-3~247-23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